

발 간 등 록 번 호

11-B090015-000807-01

건전한 낙시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마련 방안 연구

2011. 9.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마련 방안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 9.

한국법제연구원
원 장 김 기 표

《 참여 연구진 》

연구책임자 : 이 순 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윤 계 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 광 호 (한국수산회 연구위원)

요약면

1. 연구의 개요

□ 연구명 :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연구

□ 연구기간 : 2011. 4. 18 ~ 2011. 9. 17(5개월)

□ 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추진과정

○ 보고회

- 착수보고회

1. 일시 : 2011. 5. 2(월) 14:00- 15:00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중간보고회

1. 일시 : 2011. 8. 4(목) 14:00- 16:00

2. 장소 : 농림수산식품부 6층 영상회의실

- 최종보고회

1. 일시 : 2011. 9. 27(화) 13:30- 16:00

2. 장소 : 농림수산식품부 6층 영상회의실

○ 워크숍 개최

1. 일시 : 2011. 9. 22(목) 14:00-18:00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관련 단체 의견조사

- 한국낚시연합(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2011. 6. 17

- 한국낚시업중앙회(경기도 화성시) 2011. 7. 22

○ 현장조사

- 유어장 해상 펜션 현장조사(여수, 2011.9.5)

- 내수면 낚시터 수상좌대 현장조사(충북 음성군 생극면, 2011. 9. 16)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1) 「낙시 관리 및 육성법」의 제정

「낙시 관리 및 육성법」이 2011년 2월 18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3월 9일 공포되었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2012년 9월 10일 시행).

이 법은 낙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낙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낙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낙시제한기준의 설정, 유해 낙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 낙시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도입, 낙시터업의 허가·등록 제도의 도입, 낙시어선업의 신고 등과 낙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 제도의 도입 등으로, 총 8장, 55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2) 「낙시 관리 및 육성법」의 입안취지

이 법은 낙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환경오염 및 낙시인의 안전사고 등이 문제됨에 따라, 낙시제한기준의 설정, 유해 낙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 낙시인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낙시터업의 허가·등록제도, 낙시어선업의 신고제도 등을 정하여 낙시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고 낙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하며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3) 「낙시 관리 및 육성법」의 주요내용 및 위임사항

- ① 낙시제한기준의 설정(제5조)
- ② 유해 낙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제8조 및 제50조)
- ③ 낙시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도입(제9조)
- ④ 낙시터업의 허가·등록 제도의 도입(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 ⑤ 낙시어선업의 신고 등(제25조부터 제38조까지 및 부칙 제2조)
- ⑥ 미끼기준의 설정 및 검사 제도의 도입(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 ⑦ 낙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 제도 도입(제47조)

4) 위임법령의 구체안 작성을 위한 연구 필요

「낙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작성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24개 사항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한 25개 사항에 대한 안을 작성하여 법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작성해야 한다.

(2) 연구의 목적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낚시 산업 발전을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하위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합리적 기준 및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여 하위법령 제정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하위법령안의 주요내용

(1) 대통령령 제정안의 주요내용

1) 낚시제한기준의 설정(안 제2조)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體長)·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한 기준(낚시제한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수산자원관리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체중·시기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유해어업에 관해서도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령에서도 위 법상의 제한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서도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제한에 관한 기준은 하천·호소의 이용목적이나 수질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법이 정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와는 목적을 달리하고 있고, 또 적용범위(그 제한의 장소)가 낚시제한구역이라는 점에서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곤란하다.

또한 법 제3항에서는 시·도의 조례로 법령에서 정하는 낚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낚시제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다.

2) 유해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안 제5조)

낚시도구(낚싯대와 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 법제2조제1호 본문 중 정의)는 수산동물을 낚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되는 경우에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고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낚시도구의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낚시도구에 대해서는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없다고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유해물질 허용기준은 낚시인의 행동의 자유 및 제조·판매·수입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기준의 설정은 비례원칙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능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동법 제12조의2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잔류하거나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하여 1. 생산단계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의 적합 여부, 2. 유통·판매단계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법 제2조제13호의 정의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시행규칙 제21조의2에서는 생산단계의 농산물과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한 유해물질의 안전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80호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별표 1]에서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다만,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은 농산물분류 품목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어서 낚시도구의 유해물질 허용기준에는 적용할 수 없다.

낚시도구는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의 공산품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낚시도구는 안전인증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낚시도구 중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낚추이다. 낚시 중 유출되는 낚추의 위험성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여기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부족한 현상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함량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과학적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른 제한을 낚시 관계자들이 준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3) 낚시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도입(안 제6조)

낚시인의 안전을 위해 법 제9조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낚시인에게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낚시어선업자·선원·승객의 안전을 위해 법 제34조는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기상과 해상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고려하여 낚시어선업자·선원·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낚시인에게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과 출항제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다.

제9조와 제34조는 기본적으로 낚시인, 낚시어선업자·선원·승객의 안전을 위해 기상, 해상상황이 악화될 경우 등을 요건으로 하여 안전조치 및 출항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고, 그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구체적 요건은 양 조문이 공유할 수 있다.

안전조치 및 출항제한의 요건은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서 정하는 출항의 제한 기준 등을 이관하여 규정한다.

4) 낚시터업의 허가·등록 제도의 도입

① 낚시터업 허가의 우선순위(안 제8조)

낚시터업은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어업이며,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는 동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유어장은 수산업법 제65조에 따라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遊漁場)(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받아 운영된다.

먼저 내수면어업법상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內水面漁業契), 법인과 그 밖의 단체,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내수면 어업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이다.

이를 유어장의 지정에 관한 수산업법 제65조와 조합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 영어조합법인, 그 밖에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법인, 둘째,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허가의 연장을 신청한 자, 셋째, 낚시터업을 5년 이상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넷째, 수생태계의 보전 및 수산자원의 보호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또한 위 우선순위는 지역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낙시터업의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 낙시터의 적절한 관리 및 건전한 경영,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을 보전을 도모한다.

1. 낙시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에서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낙시터의 관리 및 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전·보호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② 낙시터업의 허가기준(안 제9조)

법 제11조는 낙시터업의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고, 특히 제1항제1호 “낙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낙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것”, 제3호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낙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에 관한 시설·장비의 기준과 종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먼저, 제1호는 낙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낙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과 장비의 구분을 1. 안전시설과 장비, 2. 편의시설과 장비, 3. 낙시터 관리 시설과 장비로 구분하고, 각 구분에 해당하는 시설과 장비를 규정한다.

1. 안전시설과 장비에는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관리선에 비치해야 하는 장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구명동의, 구명부환 및 구명줄, 소화기, 의료장비·구급의약품으로 정하고, 2. 편의시설과 장비에는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로서 간이화장실, 폐기물 처리 또는 저장 시설, 동 규칙 제2항에 따른 낙시터 안내표지판으로 정하고, 3. 낙시터 관리 시설과 장비에는 낙시터 관리 사무실, 동 규칙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방송 또는 통신시설로 정한다.

제3호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 보장 및 건전한 낙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지하수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 취급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는 시설로 정한다.

③ 낚시터업자의 등의 준수사항(안 제15-제16조)

법 제20조는 낚시터업자와 종사자로 하여금 낚시터에 수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어종(방류금지어종)을 방류해서는 안되며, 수질의 한계기준 및 수생태계 보존의 한계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수생태계를 훼손시키지 않을 것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방류금지어종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의 한계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가) 방류금지어종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어종(이하 “방류 금지 어종”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생태계의 교란을 야기하는 어종에 관해서는 내수면에 있어서는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2조제4호에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에 관한 정의가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위임되어 있다. 환경부령인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별표 2[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에서 포유류, 양서류·파충류, 어류, 식물로 구분되어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이 정해져있다. 이 중에서 법에서는 “어종”을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포유류, 양서류·파충류, 식물을 제외하고 어류만을 방류금지어종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어장에 있어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 정의되어 있고, 동법 동조 제13호에 “유해해양생물”이 정의되어 있다.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의 정의와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규정이 없으며, 현재 지정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다만, 동 규칙 제5조에서는 유해해양생물에 관해서는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다. 유해해양생물은 그 정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이기 때문에 해양생태계교란 종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현재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방류금지어종으로는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 지정되면 유해해양생물에 관한 내용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수산동물의 전염병으로 인한 집단 폐사 등이 발생할 경우 수생태계의 균형이 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의 감염검사결과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방류수산동물에 대해서도 방류금지어종으로 할 필요가 있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의 한계기준

법 제20조제1항은 낚시터업자와 그 종사자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의 한계기준을 초과하여 낚시터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오염 내지 훼손시켜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의 한계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해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제10조의2에서는 수계영향권별 및 조사·측정 대상이 되는 호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을 환경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고시 제2006-227호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과 달성기간」에서는 하천과 호소에서의 각 건강보호항목 목표기준과 생활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내수면 낚시터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저수지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하여 목적외 사용되고 있는 바,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267호]에서는 그 제5조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의한 수질조사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약간나쁨” 등급을 초과하는 농업용 호소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하여 시설관리자와 당해 시설의 유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중점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는 시설관리자는 농업용 호소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약간나쁨”등급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해 추가적인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목적외 사용 승인기간의 갱신 또는 신규 목적 외 사용 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고,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환경기준을 별표1에서 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개정 2011.3.29> 환경기준에서는 1. 대기, 2. 소음, 3. 수질 및 수생태계(가. 하천, 나. 호소, 다. 해역)에서의 건강환경기준과 생활환경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 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목표기준의 기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낙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존의 한계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시행령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하천·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약간나쁨” 등급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5) 낙시어선업의 신고 등(안 제17조부터 제19조)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낙시어선업법」은 법 시행일에 폐지되고, 관련 규정은 동법으로 이관된다. 따라서 위임된 내용도 기존의 「낙시어선업법」 하위법령의 내용을 큰 수정없이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관한다.

6) 미끼기준의 설정 및 검사 제도의 도입(안 제20조)

법 제40조부터 제42조는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과다하게 함유된 미끼는 환경오염이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을 설정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 중에 있는 미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미끼는 회수나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끼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다.

“미끼”란 수산동물을 낚기 위하여 사용하는 떡밥 등으로서(법 제2조제9호), 미끼는 성분의 특성에 따라 동물성 미끼, 식물성 미끼, 가짜 미끼(루어)로 분류될 수 있다.

동물성 미끼에는 생동물성(지렁이, 구더기, 새우, 참붕어 등)과 동물성떡밥(어분, 번데기 가루, 새우가루 등), 식물성 미끼로는 곡물떡밥(글루텐, 곡물혼합, 뽕튀기한 곡물 등), 동물성과 식물성을 혼합한 떡밥(새우+글루텐, 번데기+글루텐 등)이 있다.

식물성 미끼의 경우 곡물이 사용되는 바, 농산물의 경우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생산단계 농산물에 적용할 농약 등 유해물질 잔류기준에 관해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80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이 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농약잔류기준과 중금속 잔류기준을 「식품위생법」 제7조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만, 미끼는 식품(모든 음식물,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곤란하다.

또한, 사료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 인체 또는 동물 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사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3항에서 유해물질·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142호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제3조에서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을 [별표 1] 「사료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에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의 함량기준(미끼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경우에는 식물성 미끼기준은 사료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동물성 미끼기준은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을 설정하기에는 관련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폐수슬러지를 먹이로 사육하는 지렁이를 미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지만, 실제 낚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지렁이를 대체할 만한 것이 현재 없다는 점에서 규제의 실행가능성이 부족하다. 동물성 미끼기준에 관한 연구 후, 규제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유예하고 홍보 등을 통해 규제순응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짜 미끼(루어)의 경우에는 낚시도구의 하나로서 낚시도구 유해물질 허용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농림수산식품부령 제정안의 주요내용

법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은 낚시터업의 승계시 신고사항, 낚시터 휴업·폐업시의 신고사항, 낚시어선업의 신고에 따른 보고의무 절차, 낚시어선업의 신고확인증 및 승객준수사항의 고시 절차 및 내용, 낚시어선의 출입항 신고사항, 낚시어선업자 영업폐쇄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 미끼의 압류 또는 폐기 등의 방법과 절차, 우수낚시터 지정기준 및 절차, 명예감시원의 자격증표, 위촉 방법 등, 전문교육의 내용 및 교육실시 기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위와 같이 주로 행정집행을 위한 세부기준,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및 서식과 별표로 구성되어 있다.

목 차

제 1 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1. 연구의 필요성	21
2. 연구의 목적	25
제 2 장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주요 내용 검토	27
제 1 절 법률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27
1. 법률의 제정 배경	27
2. 법률의 구성 및 주요내용	28
제 2 절 법률의 주요 규제사항 검토	31
1. 법률상 각종 규제기준과 내용 분석	31
2. 하위법령 위임사항 분석	47
제 3 장 낙시 관련 법령의 검토	51
제 1 절 국내 낙시관련 법률 검토	51
1. 내수면어업법	51
2. 수산업법과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56
3. 낙시어선업법	70
4. 수산자원관리법	84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84
6. 자연환경보전법	86
7. 야생동식물보호법	87
8. 하천법	88
9. 수도법	89
10. 문화재보호법	89
제 2 절 주요국의 낙시관련 법률과 사례	90
1. 미국의 유어낙시 선순환 사례 및 시사점	90
2. 일본 등의 사례	96

제 4 장 유해 낚시도구 제한 기준 제시	97
제 1 절 수질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97
1. 환경기준	97
2. 수질 부영양화 평가기준	98
3. 하·폐수처리 방류수질 기준	99
4. 낚시 구성원의 환경오염·개선	99
제 2 절 낚시 추 및 미끼 등의 기준	100
1. 낚시 추 및 미끼의 위해성 - 환경오염	100
2. 낚추 및 집어제 규제	101
제 5 장 낚시관리 및 육성법 하위 법령 기준 마련	105
1. 출항의 제한 기준	105
2. 전문교육의 실시	108
3. 자조금의 적립지원	121
제 6 장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정령안	133
1. 해 설	133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정령안	171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191

제 1 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1) 「낙시 관리 및 육성법」의 제정

「낙시 관리 및 육성법」이 2011년 2월 18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3월 9일 공포되었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2012년 9월 10일 시행).

이 법은 낙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낙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낙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낙시제한기준의 설정, 유해 낙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 낙시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도입, 낙시터업의 허가·등록제도의 도입, 낙시어선업의 신고 등과 낙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 제도의 도입 등으로, 총 8장, 55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2) 「낙시 관리 및 육성법」의 입안취지

이 법은 낙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환경오염 및 낙시인의 안전사고 등이 문제됨에 따라, 낙시제한기준의 설정, 유해 낙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 낙시인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낙시터업의 허가·등록제도, 낙시어선업의 신고제도 등을 정하여 낙시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고 낙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하며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1) 건전한 낙시문화의 조성 및 여가생활 기반 마련 필요

낙시인구가 570여만명에 달하는 지금, 안전을 고려하고 환경과 농어촌을 생각하는 건전한 낙시문화의 조성 및 확산이 필요하다.

일부 낙시인들의 오염물질 배출, 수산자원 남획으로 낙시인에 대한 농어촌 및 일반 국민의 인식이 긍정적이지 못한 실정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추구하는 국민적 요구는 증대되고 있다.

여가 선용 기회가 늘어나고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여가·레저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주요 여가 활동의 하나인 낙시의 서비스, 문화, 산업 등은 여전히 20세기에 머무르면서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2) 낚시의 부작용을 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 확산

①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낚시 중 유실된 낚추의 위험성 및 낚시 대상 어족 자원의 감소라고 하는 부작용을 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낚시 어획량(추정) : 230,564톤(내수면·연근해 어획량의 약 18%)

② 낚시인 안전사고 지속 발생

위험지역에서의 안전사고 발생건수('09년, 해양경찰청)

※ 낚시어선 안전사고 현황(해양경찰청)

구 분	선 박(건)					인 명(명)		
	계	총 들	좌 초	침 물	기 타 (추락)	계	사망·실종	구 조
'09년	10	5	3	-	2	470	2	472
'08년	8	4	3	1		451	-	451
'07년	6	2	4	-		362	3	359
'06년	13	4	6	3		394	14	280

※ 낚시어선 불법행위 단속현황(해양경찰청)

구 분	계	미신고 영 업	정 원 초 과	금 지 구 역	음 주 운 향	인명구조 장비미비치	출·입항 미신고	기타 (과태료 등)
'09년	571건	68	39	30	2	12	38	382
'08년	861건	42	71	34	4	13	68	629
'07년	1,037건	47	46	36	5	18	52	833
'06년	846건	65	96	56	6	30	93	500

※ 낚시인 안전사고 현황(해양경찰청)

구 분	갯바위		방파제	
	사고건수	실종사망	사고건수	실종사망
'10년	48	8	34	4
'09년	61	14	20	4
'08년	53	13	31	11
'07년	37	3	31	3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주요내용 및 위임사항

1) 낚시제한기준의 설정(제5조)

낚시인구가 늘어나고 낚시도구와 방법이 발전하여 수산자원이 남획되고 토종어류의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나 크기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의 도구·방법·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낚시제한기준을 시·도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제8조 및 제50조)

납추 등 유해한 낚시도구는 수중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체의 건강에도 위험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해 낚시도구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는 등 유해한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판매·보관 장소의 낚시도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3) 낚시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도입(제9조)

위험하거나 격리된 장소에서 낚시를 할 경우 기상변동 등에 따른 사고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낚시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이나 위험지역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4) 낚시터업의 허가·등록 제도의 도입(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무분별한 낚시터의 개발은 수산자원의 남획, 수산환경의 오염, 농경지의 훼손 및 농어업인과의 갈등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할 경우에 허가나 등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허가나 면허받은 해수면에서 낚시터업 등을 할 경우에는 「수산업법」에 따라 유어장(遊漁場)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고, 내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할 경우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공유수면은 허가를, 사유수면은 임의적인 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내수면이 사유수면일 경우에는 등록을 하도록 하고, 공유수면 등 그 외의 수면 등에서는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5) 낚시어선업의 신고 등(제25조부터 제38조까지 및 부칙 제2조)

종전의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출입항신고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낚시어선업법」을 폐지한다.

6) 미끼기준의 설정 및 검사 제도의 도입(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과다하게 함유된 미끼는 환경오염이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끼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검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을 설정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 중에 있는 미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미끼는 회수나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7)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 제도 도입(제47조)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와 직결되는 사업을 영위함에도 이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안전사고나 환경문제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한다.

(4) 위임법령의 구체안 작성을 위한 연구 필요

「낙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작성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24개 사항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한 25개 사항에 대한 안을 작성하여 법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작성해야 한다.

2. 연구의 목적

건전한 낙시문화의 조성 및 낙시 산업 발전을 위해 「낙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하위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합리적 기준 및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여 하위법령 제정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제 2 장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주요 내용 검토

제 1 절 법률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1. 법률의 제정 배경

(1) 입법 배경

① 여가 선용 기회가 늘어나고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여가·레저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상승

② 낙시 관련 제도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고, 여기에 더하여 최근의 낙시인구 증가와 낙시 도구의 발전 등으로 토종어류 등 수산자원의 남획, 환경오염 그리고 낙시 관련 사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

(2) 입법 연혁

① 정부 조직개편 이전

- 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낙시 활용방안 대통령 업무보고(해양수산부, '05. 3.)
- 낙시관련 정책 개발 및 낙시발전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및 토론회·심포지엄 개최('05. 11.)
- 환경과 레저가 조화된 「낙시종합발전계획」국무회의보고('06. 1.)
- 「낙시관리 및 육성법(가칭)」제정안 마련, 관계부처 의견조회('06. 12.)

② 정부 조직개편 이후

- 정부 조직개편 및 새 정부의 농정방향을 반영한 수정안 마련(농림수산식품부, '08. 11)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 평가('08. 12~'09. 1)
-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08. 12~'09. 6)
- 제정법률안 입법예고('09. 7. 1~7. 21)
- 통계청 정책통계기반평가, 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 규제심사('09. 7~8)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09. 8~9))
- 법제처 심사('09. 9. 21~'10. 1)
- 법률안 국회제출('10. 2)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가결('10. 9. 8)
-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10. 12. 7)

- 국회 본회의 본안가결('11. 2. 18)
- 공포('11. 3. 9)
- 시행('12. 9. 10)

2. 법률의 구성 및 주요내용

(1) 법률의 구성

주요내용은 낙시제한기준의 설정, 유해 낙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 낙시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도입, 낙시터업의 허가·등록 제도의 도입, 낙시어선업의 신고 등과 낙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 제도의 도입 등으로, 총 8장, 55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제1조-제4조)

제2장 낙시의 관리(제5조-제9조)

제3장 낙시터업(제10조-제24조)

제4장 낙시어선업(제25조-제39조)

제5장 미끼의 관리(제40조-제42조)

제6장 낙시 및 낙시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제43조-제47조)

제7장 보칙(제48조-제52조)

제8장 벌칙(제53조-제55조)

부 칙

(2) 법률의 주요내용

① 낙시제한기준의 설정(제5조)

낙시인구가 늘어나고 낙시도구와 방법이 발전하여 수산자원이 남획되고 토종어류의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낙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나 크기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낙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낙시의 도구·방법·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낙시제한기준을 시·도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낙시제한기준을 설정하게 됨에 따라 무분별한 수산자원의 포획과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어업인과 낙시인과의 갈등이 해소되고 건전한 낙시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낚시통제구역(제6조)

제6조는 시·도지사가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시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절차, 안내판의 규격·내용 및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하천법」 46조제6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천·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나, 수산자원의 보호와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지역에서 낚시 행위를 통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법에는 시·도지사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낚시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도입(제9조)

위험하거나 격리된 장소에서 낚시를 할 경우 기상변동 등에 따른 사고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낚시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이나 위험지역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조치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기상재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 또는 방파제나 갯바위 및 간출암(干出巖) 등 위험장소에서의 낚시를 통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낚시로 인한 인명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낚시터업 허가제도의 도입(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무분별한 낚시터의 개발은 수산자원의 남획, 수산환경의 오염, 농경지의 훼손 및 농어업인과의 갈등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할 경우에 허가나 등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허가나 면허받은 해수면에서 낚시터업 등을 할 경우에는 「수산업법」에 따라 유어장(遊漁場)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고, 내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할 경우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공유수면은 허가를, 사유수면은 임의적인 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내수면이 사유수면일 경우에는 등록을 하도록 하고, 공유수면 등 그 외의 수면 등에서는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모든 낙시터업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환경의 보전 등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바다나 바닷가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통하여 낙시터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⑤ 낙시어선업의 신고등(제25조부터 제39조까지 및 부칙 제2조)

중전의 「낙시어선법」에 따른 낙시어선업의 신고, 낙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출입항신고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낙시어선업법」을 폐지한다.

바다에서의 낙시어선업의 경우 시장·군수는 낙시어선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미끼기준의 설정 및 검사제도의 도입(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과다하게 함유된 미끼는 환경오염이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끼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검사할 필요가 있다.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을 설정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 중에 있는 미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미끼는 회수나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미끼기준을 설정하고, 유통단속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미끼의 수입과 제조를 차단하게 됨에 따라, 부적합한 미끼로 인한 환경·생태계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⑦ 낙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 제도 도입(제47조)

낙시터업자와 낙시어선업자는 낙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와 직결되는 사업을 영위함에도 이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안전사고나 환경문제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낙시터업자와 낙시어선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한다.

낙시터업자 등이 정기적인 전문교육을 받게 됨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나 낙시인 등의 안전사고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절 법률의 주요 규제사항 검토

1. 법률상 각종 규제기준과 내용 분석

(1) 낚시제한기준

오늘날 어구의 발달 및 포획량의 증가로 인하여 어족자원은 나날이 감소하고 있으며, 낚시용 어족자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오늘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욕구의 증대, 낚시도구의 발달 및 낚시기법의 발달로 인하여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풍부하던 낚시용 어족자원도 점차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낚시용 어족자원의 감소방지 및 보호, 증식 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는 낚시의 방법, 낚시금지기간, 낚시금지체장 및 그 대상어종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①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기준설정

기본적으로 낚시금지기간, 낚시금지체장 등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과 별표 2(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체장 또는 체중)에 의한 기준과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별표 1(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 및 체장)에 의하고, 그 외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그 밖에 야생동·식물보호법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포획금지어종을 규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별도 규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②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멸종위기야생동·식물)

포획금지어종의 설정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고려될 수 있다.

- ① 멸종위기 수산동물의 보호
- ② 천연기념물의 보호
- ③ 기타 보호가치 있는 어종의 지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구역 및 수심)

[별표 1] <개정 2010.11.10>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제6조제1항 관련)

수산자원	학 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1. 모든 수산동식물		주1) 및 주2)의 해역에서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산자원	학 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2. 어 류	가. 개서대	<i>Cynoglossus robustus</i>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나. 대구	<i>Gadus macrocephalus</i>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한정하여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다. 문치가자미	<i>Pleuronectes yokohamae</i>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다만, 경상북도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한다.
	라. 연어	<i>Oncorhynchus keta</i>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마. 전어	<i>Konosirus punctatus</i>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다만,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제외한다.
	바. 쥐노래미	<i>Hexagrammos otakii</i>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만, 주3)의 해역에서는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로 한다.
	사. 참홍어	<i>Raja pulchra</i>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아. 참조기	<i>Larimichthys polyactis Bleeker</i>	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3. 갑 각 류	가. 꽃게	<i>Portunus trituberculatus</i>	6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다만, 주3) 및 주4)의 해역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며, 해당 기간 중에 꽃게를 5퍼센트 이상 포획·채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및 근해안강망어업은 제외한다.
	나. 대게류 (붉은 대게는 제외한다)	<i>Chionoecetes spp.</i>	1)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만, 동경131도30분 이동수역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하고, 북위 38도34분09.68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지경리 해안선의 교점, 북위38도 34분09.69초와 동경128도30분06.89초의

수산자원	학 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p>교점, 북위38도33분09.69초와 동경 128도30분06.89초의 교점, 북위38도 33분09.69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 면 저진리 해안선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는 4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p> <p>2) 주5) 및 주6)의 해역에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p>	
다. 붉은대게	<i>Chionoecetes japonicus</i>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다만, 강원도 연안자망어업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한다.	
라. 털게	<i>Erimacrus isenbecki</i>	강원도에 한정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 닭새우	<i>Panulirus japonicus</i>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바. 대하	<i>Penaeus orientalis</i>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 펼닭새우	<i>Linuparus trigonus</i>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 패류	가. 백합	<i>Meretrix lusoria</i>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나. 새조개	<i>Fulvia mutica</i>	6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무안군과 영광군은 제외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다. 소라	<i>Batillus cornutus</i>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과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와 독도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라. 전복류	<i>Haliotis spp.</i>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마. 코끼리조개	<i>Panopea japonica</i>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한정하여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산자원	학 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바. 키조개	<i>Atrina pectinata</i>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 가리비	<i>Patinopecten yessoensis</i>	주7)의 해역에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 해 조 류	가. 개다시마	<i>Kjellmaniella crassifolia</i>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나. 감태 검등감태	<i>Ecklonia cava</i> <i>Ecklonia kurome</i>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 곰피	<i>Ecklonia stolonifera</i>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라. 넓미역	<i>Undariopsis peterseniana</i>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하여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마. 대황	<i>Eisenia bicyclis</i>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바. 도박류 (진도박, 떡도박)	<i>Grateloupia spp.</i>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사. 뜰부기	<i>Silvetia siliquosa</i>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아. 우뚝가사리	<i>Gelidium amansii</i>	11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자. 툇	<i>Hizikia fusiformis</i>	10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6. 기 타	해삼	<i>Stichopus japonicus</i>

- 주1)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북서쪽 끝, 같은 시 옥도면 개야도 서쪽 끝과 북위36도02분10.69초, 동경126도39분52.59초의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주2)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개섬 고정, 같은 도 고창군 심원면 미여도 고정과 같은 군 해리면 동호리 고정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주3)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1 참조)
- 가. 북위37도59분39.84초, 동경124도35분53.20초
 - 나. 북위37도59분39.84초, 동경124도39분53.18초
 - 다. 북위37도59분09.84초, 동경124도39분53.18초
 - 라. 북위37도59분09.84초, 동경124도39분53.18초에서 백령도 동쪽 끝 정동해상 800미터의 점에 이르는 백령도 북동쪽 해안선으로부터 800미터의 선

- 마. 소청도의 동쪽 끝 정동해상 1마일의 점
- 바. 북위37도43분09.96초, 동경124도47분17.15초
- 사. 북위37도35분10.01초, 동경124도47분17.15초
- 아. 북위37도35분10.00초, 동경124도19분53.30초
- 자. 북위37도40분09.97초, 동경124도19분53.30초
- 차. 북위37도40분09.97초, 동경124도09분53.36초
- 카. 북위37도55분09.86초, 동경124도09분53.35초
- 타. 북위37도55분09.87초, 동경124도24분53.27초
- 파. 북위37도58분29.84초, 동경124도24분53.27초
- 하. 북위37도58분29.85초, 동경124도35분53.20초
- 거. 북위37도59분39.84초, 동경124도35분53.20초

주4)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2 참조)

- 가. 북위37도40분29.45초, 동경125도43분02.91초(대연평도 동쪽 끝)
- 나. 북위37도36분46.02초, 동경125도45분04.83초
- 다. 북위37도36분46.02초, 동경125도46분28.83초
- 라. 북위37도30분10.07초, 동경125도51분04.80초
- 마. 북위37도30분10.07초, 동경125도59분52.76초
- 바. 북위37도00분10.28초, 동경125도59분52.77초
- 사. 북위37도00분10.26초, 동경124도44분38.18초
- 아. 북위37도25분10.08초, 동경124도41분11.19초
- 자. 북위37도25분10.09초, 동경125도22분52.96초
- 차. 북위37도28분50.07초, 동경125도22분52.96초
- 카. 북위37도30분10.06초, 동경125도24분52.95초
- 타. 북위37도32분35.04초, 동경125도29분52.92초
- 파. 북위37도38분00.01초, 동경125도39분57.86초
- 하. 북위37도40분46.27초, 동경125도40분34.93초(대연평도 서쪽 끝)

주5)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3 참조)

- 가. 북위36도44분, 동경129도48분
- 나. 북위36도44분, 동경129도51분
- 다. 북위36도41분, 동경129도48분
- 라. 북위36도41분, 동경129도51분

주6)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3 참조)

- 가. 북위36도29분, 동경129도48분
- 나. 북위36도29분, 동경129도51분
- 다. 북위36도26분, 동경129도48분
- 라. 북위36도26분, 동경129도51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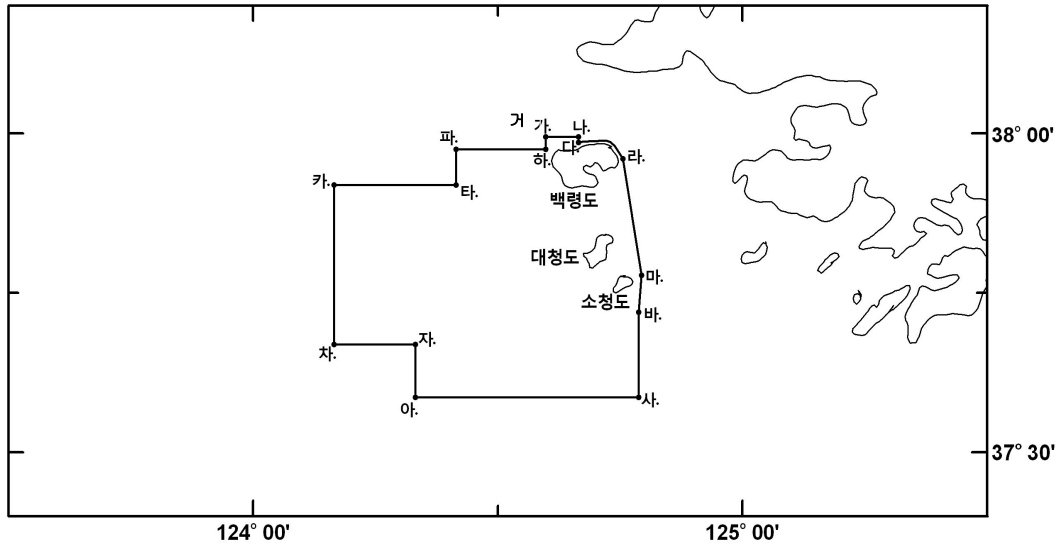
주7)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가. 북위36도04분10.74초, 동경129도24분51.72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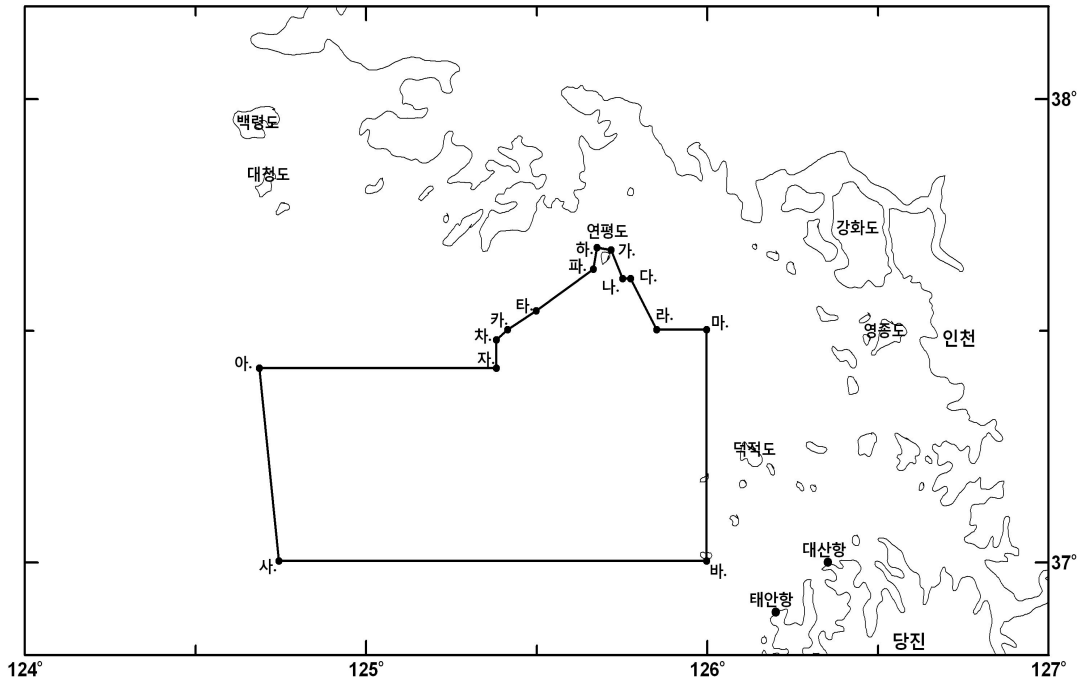
제 2 장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주요 내용 검토

- 나. 북위36도04분10.75초, 동경129도34분51.66초
- 다. 북위36도09분10.71초, 동경129도24분51.71초
- 라. 북위36도09분10.71초, 동경129도34분51.66초

[부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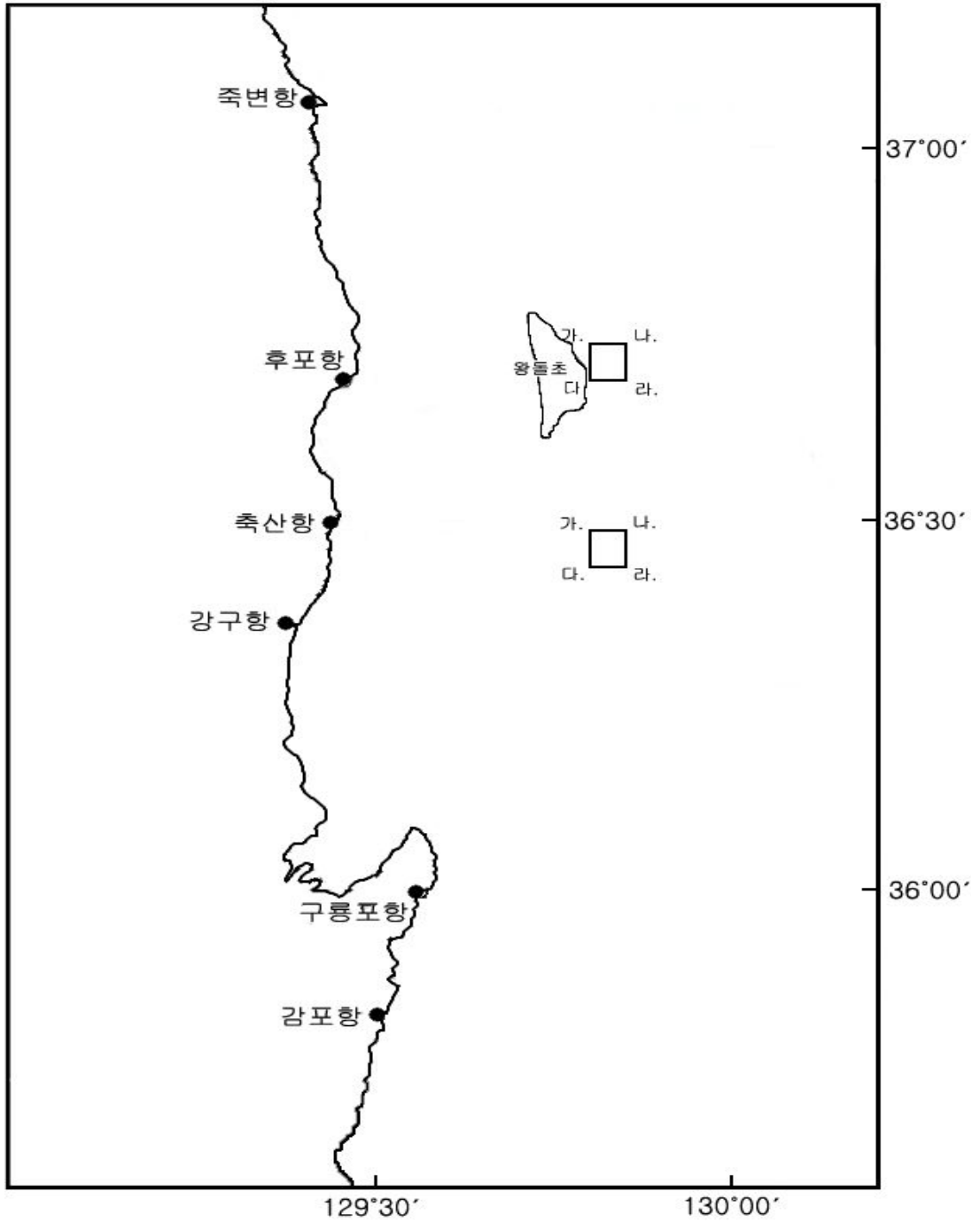


[부도 2]



[부도 3]

대게포획 금지구역도



[별표 2] <개정 2010.11.10>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제6조제2항 관련)

수산동식물	학 명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1. 어 류	가. 개서대	<i>Cynoglossus robustus</i>	26센티미터 이하
	나. 문치가자미	<i>Pleuronectes yokohamae</i>	15센티미터 이하
	다. 참가자미	<i>Pleuronectes herzensteini</i>	12센티미터 이하
	라. 감성돔	<i>Acanthopagrus schlegelii</i>	20센티미터 이하
	마. 돌돔	<i>Oplegnathus fasciatus</i>	24센티미터 이하
	바. 참돔	<i>Pagrus major</i>	24센티미터 이하
	사. 황돔	<i>Dentex tumifrons</i>	15센티미터 이하
	아. 넙치	<i>Paralichthys olivaceus</i>	21센티미터 이하
	자. 농어	<i>Lateolabrax japonicus</i>	30센티미터 이하
	차. 대구	<i>Gadus macrocephalus</i>	30센티미터 이하
	카. 도루묵	<i>Arctoscopus japonicus</i>	11센티미터 이하
	타. 명태	<i>Theragra chalcogramma</i>	27센티미터 이하
	파. 민어	<i>Miichthys miiuy</i>	33센티미터 이하
	하. 방어	<i>Seriola quinqueradiata</i>	30센티미터 이하
	거. 볼락	<i>Sebastes inermis</i>	15센티미터 이하
	너. 봉장어	<i>Conger myriaster</i>	35센티미터 이하
	더. 조피볼락	<i>Sebastes schlegelii</i>	23센티미터 이하
	러. 쥐노래미	<i>Hexagrammos otakii</i>	20센티미터 이하
	머. 황복	<i>Takifugu obscurus</i>	20센티미터 이하
	버. 참홍어	<i>Raja pulchra</i>	체반폭 42센티미터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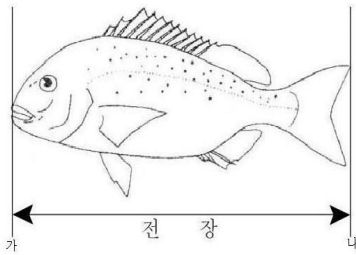
수산동식물	학 명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2. 갑각류	가. 꽃게	<i>Portunus trituberculatus</i> 6.4센티미터 이하
	나. 대게	<i>Chionoecetes opilio</i> 9센티미터 이하
	다. 털게	<i>Erimacrus isenbecki</i> 강원도산에 한정하여 7센티미터 이하
	라. 닭새우	<i>Panulirus japonicus</i> 5센티미터 이하
	마. 필닭새우	<i>Linuparus trigonus</i> 10센티미터 이하
3. 패류	가. 백합	<i>Meretrix lusoria</i> 각장 5센티미터 이하
	나. 소라	<i>Batillus cornutus</i> 각고 5센티미터 이하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 울릉도·독도산은 각고 7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다. 마대오분자기 오분자기	<i>Sulculus diversicolor diversicolor</i> <i>Sulculus diversicolor aquatilis</i> 제주특별자치도산에 한정하여 각장 4센티미터 이하
	라. 전복류	<i>Haliotis spp.</i> 각장 7센티미터 이하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산은 각장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마. 기수채첩	<i>Corbicula japonica</i> 각장 1.5센티미터 이하
4. 기타	대문어	<i>Octopus dofleini</i> 300그램 이하

※ 비고 : 수산동물의 체장(전장, 체반폭, 각장, 각고를 포함한다)은 부도와 같이 가와 나 사이의 직선거리를 계측한 값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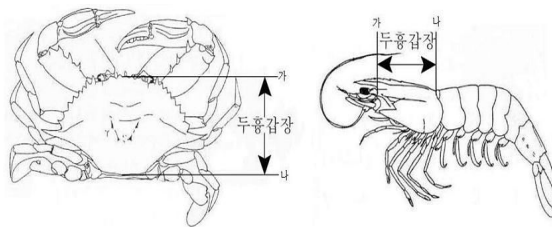
[부도]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측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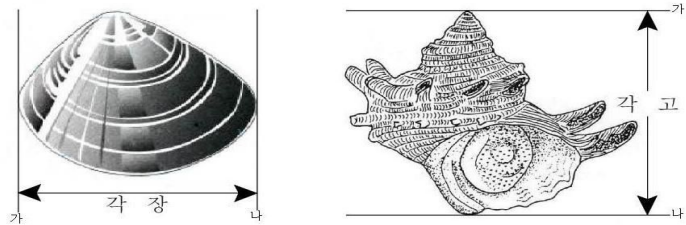
[어 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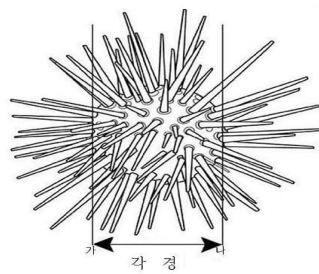
[갑각류]



[패 류]



[성 게]



[별표 1] <신설 2010.6.8>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 및 체장(제17조 관련)

1.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구역 및 기간

품 명	학 명	금지구역	금지기간
가. 은어	<i>Plecoglossus altivelis altivelis</i>	강원도, 경상북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강원도 및 경상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만, 인공적으로 조성한 댐 지역에서 자원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자원을 평가한 후 한시적으로 포획허가를 할 수 있다.
나. 연어	<i>Oncorhynchus keta</i>	전국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 빙어	<i>Hypomesus nipponensis</i>	전국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라. 쏘가리	<i>Siniperca scherzeri</i>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제 2 장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주요 내용 검토

품 명	학 명	금지구역	금지기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마. 열목어	<i>Brachymystax lenoktsinlingensis</i>	전국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바. 참게 동남참게	<i>Eriocheirsinensis</i> <i>Eriocheirjaponicus</i>	강원도, 다만, 댐은 제외한다.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 다슬기	<i>Semisulcospira spp.</i>	전국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2.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품 명	학 명	포획·채취 금지 체장
가. 산천어	<i>Oncorhynchus masou masou</i>	20센티미터 이하
나. 송어	<i>Oncorhynchus masou masou</i>	12센티미터 이하
다. 쏘가리	<i>Siniperca scherzeri</i>	18센티미터 이하
라. 황복	<i>Takifugu obscurus</i>	20센티미터 이하
마. 참게 동남참게	<i>Eriocheir sinensis</i> <i>Eriocheir japonicus</i>	5센티미터 이하
바. 기수재첩	<i>Corbicula japonica</i>	각장 1.5센티미터 이하
사. 참다슬기 꽃체다슬기 다슬기 주름다슬기 좁주름다슬기	<i>Semisulcospira coreana</i> <i>Semisulcospira gottschei</i> <i>Semisulcospira libertina</i> <i>Semisulcospira forticosta</i> <i>Semisulcospira tegulata</i>	각고 1.5센티미터 이하
아. 말조개	<i>Unio douglasiae</i>	각장 9센티미터 이하

※ 비 고

1.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각장, 각고를 포함한다)은 부도와 같이 “가”와 “나” 사이의 직선거리를 썬 값으로 한다.
2. 낚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 그물코의 규격(그물코를 잡아 당겨서 썬 안쪽 지름의 길이를 말한다)이 24밀리미터 이하인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빙어를 포획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물코의 규격이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사용할 수 없다.
3. 빙어, 뱀장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물코의 규격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별표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제2조관련)

1. - 2. (생략)

3. 양서류·파충류

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급

번 호	종 명
1	구렁이 <i>Elaphe schrenckii</i>

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I급

번 호	종 명
1	금개구리 <i>Rana plancyi</i>
2	남생이 <i>Chinemys reevesii</i>
3	맹꽁이 <i>Kaloula borealis</i>
4	비마리뱀 <i>Sibynophis collaris</i>
5	표범장지뱀 <i>Eremias argus</i>

4. 어 류

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급

번 호	종 명
1	감돌고기 <i>Pseudopungtungia nigra</i>
2	꼬치동자개 <i>Pseudobagrus brevicorpus</i>
3	미호종개 <i>Iksookimia choii</i>
4	얼룩새코미꾸리 <i>Koreocobitis naktongensis</i>
5	통사리 <i>Liobagrus obesus</i>
6	흰수마자 <i>Gobiobotia naktongensis</i>

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I급

번 호	종 명
1	가는돌고기 <i>Pseudopungtungia tenuicorpa</i>
2	가시고기 <i>Pungitius sinensis</i>
3	꾸구리 <i>Gobiobotia macrocephala</i>
4	다복장어 <i>Lampetra reissneri</i>
5	돌상어 <i>Gobiobotia brevibarba</i>
6	독중개 <i>Cottus poecilopus</i>
7	모래주사 <i>Microphysogobio koreensis</i>
8	묵납자루 <i>Acheilognathus signifer</i>
9	임실납자루 <i>Acheilognathus somjinensis</i>
10	잔가시고기 <i>Pungitius kaibarae</i>
11	칠성장어 <i>Lampetra japonica</i>
12	한독중개 <i>Cottus hangiongensis</i>

(2) 유해 낚시도구 기준

오늘날 낚시터 주변의 환경오염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 내수면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는 곧 수질 오염을 일으키고 수중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낙시터의 환경오염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낙시인 및 일반국민의 생명·신체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

1) 환경오염 유발 낙시 도구의 제한

① 납추의 유해성 문제

오늘날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납추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납추는 그 자체의 유해한 성분으로 말미암아 환경오염유발 및 생태계파괴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사용 후 수거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라는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낙시를 하면서 떨어져 나가거나 버리고 오는 납추(봉돌)가 그대로 물속에 남아 있는 경우 이것이 수질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

② 납추사용 제한 또는 금지의 구체적 방안

바다낙시와 내수면낙시에서의 허용 또는 금지 방안

- 제1안 : 바다, 내수면 전면금지
- 제2안 : 바다만 전면금지, 내수면 허용
- 제3안 : 바다 전면금지, 내수면 제한적 금지

바다낙시의 경우에는 납추의 사용을 금지하더라도 낙시행위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민물낙시의 경우 그 특성상 납추의 전면적 금지는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민물의 경우에는 크기 또는 무게를 기준으로 그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다(예컨대, 200g 이상 사용금지 등).

2) 유해한 성분을 포함한 미끼 등의 사용제한

유해한 성분을 포함한 미끼 등을 사용하는 것은 낙시터의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미끼 등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는 유해한 성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유해한 성분을 포함한 미끼 등을 사용금지하여야 한다.

(3) 낙시터 시설기준

낙시터 시설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바다와 내수면이 그 자연적 특성 및 어족자원의 보호·관리·조성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시설기준은 허가기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설정하는 바람직할 것이다.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낙시터업 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적극요건으로 “낙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낙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었”을 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소극요건으로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낙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시설·장비의 기준과 종류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제1호의 시설·장비는 1. 낙시인의 안전시설, 2. 편의시설, 3. 낙시터의 관리 시설로 대별할 수 있다.

1. 안전시설·장비

- 가. 구명동의
- 나. 구명부환 및 구명줄
- 다. 소화기(용량 2.5킬로그램 이상)
- 라. 의료장비·구급의약품

2. 편의시설·장비

- 가. 간이화장실(소각식 또는 수거식)
- 나.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시설
- 다. 낙시터 안내표지판

3. 낙시터 관리 시설·장비

- 가. 낙시터 관리 사무실
- 나. 방송 또는 통신 시설

2. 하위법령 위임사항 분석

(1) 대통령령 위임사항

연 번	조 문	내 용
1	제2조(정의) 제1호	낙시로 낚는 수산동물
2	제5조(낙시제한기준의 설정) 제2항	(낙시제한기준) 낙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체중 등의 기준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낙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의 기준
3	제6조(낙시통제구역) 제3항	(낙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내용 및 절차) 낙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해제를 하는 경우의 낙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해야 하는 사항
4	제8조(유해 낙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낙시도구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잔류 허용기준)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 및 잔류
5	제9조(낙시인 안전의 관리) 제1항	(낙시인 안전의 관리를 위한 조치) 낙시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예, 기상악화 등)
6	제10조(낙시터업의 허가) 제1항	(중요사항 변경) 낙시터의 위치/구역 그 밖에 중요사항
7	제10조(낙시터업의 허가) 제5항	(낙시터업 허가의 우선순위) 낙시터업 허가의 우선순위
8	제11조(낙시터업의 허가기준) 제2항	(낙시터업의 허가기준) ① 낙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낙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기준 ②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낙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장비의 종류
9	제12조(허가의 유효기간) 제1항	(낙시터업의 허가유효기간) 낙시터업의 허가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는 경우
10	제13조(수면 등 이용의 협의)	(공공용수면 낙시터업 허가시 및 유효기간 연장시 수면관리자와의 협의)

제 2 장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주요 내용 검토

연 번	조 문	내 용
11	제15조(원상회복 등) 제2항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사유)
12	제15조(원상회복 등) 제5항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원상회복의 의무와 명령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원상회복 비용 예치
13	제16조(낙시터업의 등록)	(사유수면의 낙시터업 등록) 등록해야 하는 중요사항의 변경
14	제18조(등록의 유효 기간) 제1항	(등록의 유효기간) 낙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는 경우
15	제20조(낙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	(방류금지 어종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의 한계기준) ① 방류금지 어종 ② 수질의 한계기준 ③ 수생태계 보존의 한계기준
16	제25조(낙시어선업의 신고) 제1항	(낙시어선업 신고요건 및 신고사항) ① 낙시어선업의 신고요건(낙시어선의 대상/규모/선령/설비 등) ② 낙시어선업의 신고사항(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③ 신고사항의 중요한 변경
17	제27조(영업구역)	(공동영업구역의 지정) 연접한 시/도 간 수역에 대한 공동영업구역의 지정
18	제34조(출항의 제한) 제2항	(출항제한의 기준) 기상과 해상상황 등에 관한 정보 등을 고려한 출항제한의 기준
19	제40조(미끼기준의 설정) 제2항	(미끼기준)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의 함량기준
20	제45조(낙시 관련 산 업 등의 지원/육성) 제4항	(낙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의 내용과 기준 등) ① 낙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 지원 ② 교육훈련과 홍보 등의 사업에 대한 비용지원
21	제48조(보험 등 가입)	(보험 또는 공제 가입)
22	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항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권한의 소속 기관장 또는 시도지사 위임
23	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항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권한의 낙시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위탁

연 번	조 문	내 용
24	제55조(과태료)	(과태료의 부과징수)

(2) 농림수산물식품부령 위임사항 목록

연 번	조 문	내 용
1	제6조(낙시통제구역) 제4항	낙시통제구역의 지정 시 안내판의 규격·내용 및 설치 장소
2	제8조(유해 낙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제1항	유해 낙시도구의 제조 예외 사항 : 학술연구나 관람 또는 전시 등
3	제10조(낙시터업의 허가) 제1항	수면 등에서 낙시터업의 허가 기준
4	제12조(허가의 유효기간) 제4항	낙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제3항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	제15조(원상회복 등) 제2항	원상회복 면제 사항
7	제16조(낙시터업의 등록) 제1항	사유수면 낙시터업 등록 사항
8	제18조(등록의 유효기간) 제2항	낙시터업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9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제3항	낙시터업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0	제20조(낙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제4호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낙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
11	제21조(낙시터업의 승계) 제3항	종전의 낙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사항
12	제24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낙시터업자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사항
13	제26조(신고사항 등의 보고) 제1항	낙시어선업의 신고에 따른 보고의무 및 절차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제2장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주요 내용 검토

연 번	조 문	내 용
14	제26조(신고사항 등의 보고) 제2항	낙시어선업의 신고에 따른 보고의무 및 절차 (시·도지사→농림수산식품부장관)
15	제32조(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고시 절차 및 내용
16	제33조(출입항 신고 등) 제1항	낙시어선의 출입항 신고 사항
17	제38조(영업의 폐쇄 등) 제3항	낙시어선업자 영업폐쇄 또는 영업정지 등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8	제39조(폐업 신고 등) 제1항	낙시어선업 폐업 신고사항
19	제42조(폐기 등의 조치) 제3항	미끼 압류 또는 폐기 등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
20	제44조(우수낙시터의 지정 등) 제1항	우수낙시터 지정기준
21	제44조(우수낙시터의 지정 등) 제4항	우수낙시터 지정절차
22	제46조(명예감시원) 제3항	명예감시원의 자격, 증표, 위촉방법 및 임무와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내용 및 지급 방법에 필요한 사항
23	제47조(교육·홍보) 제3항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
24	제49조(수수료)	수수료 사항 1. 제10조제1항에 따라 낙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라 낙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21조제3항에 따라 낙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신고하는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라 낙시어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5. 제44조제2항에 따라 우수낙시터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25	제50조(출입·검사 등) 제5항	출입·검사 등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 3 장 낚시 관련 법령의 검토

제 1 절 국내 낚시관련 법률 검토

1. 내수면어업법

(1) 목 적

내수면어업법은 내수면어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어업을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낚시업, 외줄낚시어업과 같은 어업에 관한 규정과 유어행위 등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관련 규정이라 할 수 있다.

(2) 법의 적용수면

내수면어업법은 공공용 수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수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공공용 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사유수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동법 제3조).

공공용수면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내수면을 말한다(동법 제2조제2호).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하고(동 시행령 제2조),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기수: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동법 제2조제1호).

따라서, 이 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기수: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에 적용하고, 이러한 공공용 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사유수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밖의 사유수면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3) 낚시 관련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 낚시업과 외줄낚시어업

① 허가어업으로서의 낚시업 - 공공용 수면 및 공공용 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사유수면에서의 낚시업

내수면어업법 제9조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어업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허가할 때에는 내수면의 용도, 자원상태,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어업의 규모와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9조제5호에 낚시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낚시업이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터를 경영하는 업(業)”으로 정의되어 있다.

제5호의 낚시업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낚시터업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신고어업으로서의 사유수면에서의 낚시업

그리고 제11조제2항은 사유수면에서 낚시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내수면어업신고서를 다음 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신고어업으로서의 외줄낚시어업

외줄낚시어업이란 외줄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이다. 외줄낚시어업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유수면에서 외줄낚시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동법 제11조제2항). 외줄낚시어업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수면어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4) 유어행위 제한 및 유해어업 금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동법 제18조).

① 유어행위 중 어구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지만,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는 위 어구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동 시행령 제14조제2항).

②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의 제한시 고려사항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한하려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자원량 등 수중 생태계 현황
2. 제한하려는 수면에서의 유어행위가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 현황
4.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시·도보호야생동·식물 등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수산동식물의 서식 현황
5. 수산자원의 산란·성육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③ 유어행위 제한의 고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제한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동 시행령 제14조제4항).

1. 제한하려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2. 제한하려는 시기·대상 등 제한사항
3.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4. 그 밖에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유해어업의 금지

내수면에서는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해서는 안되지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19조).

(5) 포획·채취 금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고, 그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우선순위

동법 제10조는 면허 및 허가시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內水面漁業契), 법인과 그 밖의 단체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내수면 어업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다만, 허가어업의 경우에는 지역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할 수 있다.

우선순위에 관한 배제규정을 동법 제10조제3항에서 두고 있는데,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에서 이 법 또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의 어장 관리 및 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7) 수면이용의 협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 또는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면허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1. 어업활동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와 그 면적, 2. 어업의 종류, 3. 어업의 시기, 4. 어업의 시설물, 5. 어업을 하려는 기간, 6. 수면사용료이다(동법 시행령 제10조). 수면관리자는 수면 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수면의 시설유지 및 보존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8) 어업의 유효기간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다만,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경우 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9) 내수면어업계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내수면어업인은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할 수 있고, 내수면어업계의 조직은 어업을 하려는 내수면이 위치한 행정구역별로 조직하되 그 계원 자격 및 계원 수는 그 내수면에 잇닿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5명 이상으로 한다.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해산·조직·운영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0) 과태료

동법 제27조에는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불법어획물 방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행정관청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개정 2010.6.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 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	500만원
2. 법 제18조에 따른 유어질서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1호	100만원

위 반 행 위	해당 조문	과태료 금액
3. 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2호	100만원

2. 수산업법과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1) 유어 및 유어장의 개념

수산업법상의 낚시와 관련된 조항은 유어장(遊漁場)(체험학습 또는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의 관리자에 대한 규정, 불법유어장 운영에 대한 과태료 등이 있으며, 수산자원보호령에서는 물고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일반인들에게도 포획·채취가 가능한 종류와 일정기간 금어기를 규정하고 있다.

수산업법 제2조제19호에서는 “유어”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어장”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제65조 본문에서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수산업법 제65조는 유어장의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은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수산업법시행령 제46조 : 시행령 제2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遊漁場)(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 (구획어업의 종류) 법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구획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간망어업 : 건간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건망어업 : 건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들망어업 : 들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선인망어업 : 선인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승망류어업 : 호망·승망·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6. 안강망어업 : 안강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7. 장망류어업 : 주목망·장망·낭장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8. 지인망어업 : 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9. 해선망어업 : 해선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10. - 12. (생략)

지정된 유어장의 유효기간은 그 유어장에 속하는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유어장으로 지정된 수면에 둘 이상의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이 있는 때에는 그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 중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어업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제2항).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遊漁)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제3항).

유어장의 지정, 유어장에서의 수산자원의 조성, 포획·채취 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포획·채취의 방법, 유어장의 관리규정, 관리선의 운영, 유어장의 시설기준, 유어장 이용자의 출입, 유어장에서의 안전사고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이 제4항에 따라 관리·운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5항).

수산업법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다.

(2)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1) 목 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65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유어장 지정 신청권자

① 어촌계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수협법시행령 제2조).

어촌계의 설립절차, 사업, 인가신청 등에 대해서는 수협법시행령, 동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② 영어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은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하는 법인을 말한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출자, 사업,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販路)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자재·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수협법 제13조). 지구별수협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은 수협법 제2장, 수협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3) 어촌계 등 설립절차

① 어촌계

발기인(조합원 10명 이상) →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 정관작성 → 창립총회의 의결 → 어촌계의 설립인가 신청 → 시군구청장의 인가

② 지구별 수협의 설립 절차

발기인(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 → 정관작성 → 창립총회 의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 → 설립등기

③ 영어조합법인 설립 절차

어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 → 설립등기

4) 유어장지정신청

유어장지정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한다.

□ 첨부서류

1.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면에서의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2.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구역도
3.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3항에 따라 유어의 방법 등 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한 내용(이하 “유어장관리규정”이라 한다)
4. 유어장 지정신청을 결의한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총회의사록 사본
5.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면허어업의 어장구역과 중복되거나 법 제 29조에 따른 보호구역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관련어업자의 동의서
6. 유어장에 유어장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나. 선박검사증서 사본
 - 다.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라.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7. 유어장(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의 어장만 해당한다)에 가두리를 이용한 낚시터와 축제식을 이용한 낚시터(이하 “가두리등 낚시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
 - 나. 시설면적을 환산한 내역서 및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 산정 내역서
 - 다.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5) 유어장의 지정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 유어장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1. 수산자원이 풍부한 수면일 것
2. 인접한 다른 면허·허가어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4.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일 것
5. 면적이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어장구역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만, 가두리등 낚시터의 시설 면적은 어류등양식어업의 시설 면적의 100분의 30 미만이어야 하고, 축제식을 이용한 낚시터의 시설 면적은 총 1만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5의2. 가두리등 낚시터의 경우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지정해역이 아닐 것
- 5의3. 가두리등 낚시터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가두리등 낚시터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6. 유어장관리규정이 수산자원의 보호, 이용자의 안전 그밖에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적합할 것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을 지정하는 때에는 유어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유어장 지정의 유효기간은 당해 어장에 대한 면허·허가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어장으로 지정된 수면에 2 이상의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허가어업 중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어업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유어장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6) 유어장 관리규정

① 유어장 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유어의 방법 및 시기
2. 유어장에서의 포획·채취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와 수량
3.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유어장 이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유어장 안에서의 유어활동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6. 유어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② 유어장관리규정의 변경

시군구청장은 유어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유어장관리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7) 유어장 관리선

①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박

유어장에는 면허어업의 어장관리선으로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어선,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유선사업의 유선으로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선박에 해당하는 선박을 관리선으로 둘 수 있다.

② 관리선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비

1. 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동의. 이 경우 비치할 구명동의 중 20퍼센트 이상을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2. 승선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3. 직경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4.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 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5. 용량 2.5킬로그램 이상인 소화기
6. 비상용 구급약품
7. 그 밖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장비

③ 선박검사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선박을 관리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검사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시행규칙의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관리선의 최대 승선인원

관리선의 최대 승선인원은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으로 한다.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은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별표6에 따른다.

⑤ 관련법령

【수산업법】

제27조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①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어업권자(제37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자를 포함한다)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

- ② (생략)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어구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
- ③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는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제4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④ (생략) 관리선으로 지정 또는 승인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어업 또는 양식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 ⑤ (생략) 관리선의 규모와 수 등 관리선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선박안전법】

제8조 (정기검사)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선박시설과 만재흡수선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의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전파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국토해양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흡수선의 위치를 각각 지정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항해구역의 종류와 예외적으로 허용되거나 제한되는 항해구역,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 (최대승선인원의 산정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은 여객, 선원 및 임시승선자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승선인원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자

가. 정박 중에 선내 관람 등을 위하여 승선하는 자, 하역·수리작업 등을 위한 작업원, 선원 교대자 등 해당 항에서만 승선하는 자

나. 선박의 운항과 관련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도선사, 운항관리자, 세관공무원 및 검역공무원 등

다. 1세 미만인 유아

- 2. 여객실, 선원실, 그 밖의 최대승선인원을 산정하는 장소에 화물을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이 차지하는 장소에 상응하는 인원 수를 제외하고 산정
- 3.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경우 1세 이상 12세 미만인 자는 2명을 1명으로 산정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인원수의 범위에서 최대승선인원의 수를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8)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 ① 관리선의 사고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최대승선인원(그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 ② 가두리등 낚시터에서의 사고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4평방미터당 1명)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 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

- ④ 선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어선원등의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 이상

- ⑤ 관련법령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 (가두리등 낚시터의 관리 등) ① 가두리등 낚시터의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은 4평방미터당 1명으로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 3 조 (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9) 변경신고

① 변경신고 대상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관리선 또는 그 선명(관리선을 새로이 지정하거나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유어장관리규정

② 변경신고

변경신고서에 유어장지정서,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유어장관리선 또는 그 선명이 변경될 경우에는 1.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선박검사증서 사본, 3. 유어장 관리선에 해당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4.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③ 변경사항 기재 및 유어장관리규정의 변경

시군구청장은 지체없이 변경사항을 지정서에 기재하여 교부
유어장관리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변경

10) 유어장의 출입 등

① 관리선의 이용

수면(水面)상태의 유어장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선을 이용하여 출입

② 선박 출·입항신고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박출입항신고서를 2부씩 작성하여 신고기관에 제출 한 후 그 중 1부는 신고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선박에 갖출 것(자세한

내용은 관련법령 참조). 관리선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선박 출입항 신고 기관의 장에게 제출

③ 가두리낚시터 이용객 명부

가두리낚시터를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가두리낚시터 이용객 명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실에 비치

④ 관련법령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 (출항·입항 신고) ① 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려면 어선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출(입)항신고서를, 그 밖의 선박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출(입)항신고서를 2부씩 작성하여 신고기관에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한 후 그 중 1부는 신고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⑨ (생략)

11)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방법

별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마을어장·협동양식어장에 지정된 유어장에서는 낚시 등 간단한 도구를 이용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가 가능하고, 어류등양식어장에 지정된 유어장에서도 낚시를 이용한 수산동식물 포획(가두리 또는 축제식을 이용한 양식 어업으로 해당 어장에 허가된 양식대상 어종만 해당한다)이 가능하나, 해조류·패류·복합양식어장, 정치망어장, 정치성구획어업 구역에 지정된 유어장에서는 해당 어장에 면허되었거나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관련법령】

[별표 2] <개정 2008.12.31>

어장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제8조 관련)

유어장	유어행위(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방법)
○ 해조류·패류·복합양식 어장, 정치망어장, 정치성구획어업 구역에 지정된 유어장	○ 해당 어장에 면허되었거나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유어장	유어행위(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방법)
○ 마을어장·협동양식어장에 지정된 유어장	○ 손 및 낚시, 투망, 쪽대, 호미, 틀이, 집게 등 간단한 도구를 이용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 맨몸 또는 수중자가호흡기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 지인망·건간망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 어류등양식어장에 지정된 유어장	○ 해당 어장에 면허된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 낚시를 이용한 수산동물 포획(가두리 또는 축제식을 이용한 양식어업으로 해당 어장에 허가된 양식대상 어종만 해당한다)

12) 유어장의 시설

① 편의시설

- 간이화장실, 폐기물의 처리 또는 저장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② 안내 입간판

- 유어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 입간판 설치
- 입간판의 규격(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 바탕 흰색, 청색 글씨)
- 입간판의 내용(유어질서 유지와 수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③ 경계표지 설치

- 유어장의 경계선에 설치
- 표지 설치 장소(각 모서리와 각 변에 설치, 변에는 500미터마다 1개씩 설치)
- 표지 규격(밑변 50센티미터, 높이 30센티미터의 크기의 붉은 색 직삼각형 깃발)
- 수면에는 부자와 설치하고 갯벌인 부분에는 말목으로 설치

13) 유어장의 관리

① 관리의 위탁 및 공동유어장 관리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 3인 이상의 어촌계원 또는 조합원에게 유어장의 관리업무를 위탁, 공동으로 유어장 관리

② 관리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1. 선원의 증원 또는 교체
2. 유어장 이용시간 또는 구역의 제한
3. 관리선 운항의 제한
4. 그 밖에 관리선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군구청장의 유어장 안전 확인

1. 안전설비의 구비 및 정비현황
2. 사고발생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의 구비 및 작동현황
3. 그 밖에 유어장의 안전유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4) 가두리 등 낚시터의 안전관리 등

① 최대 동시이용 가능인원

4평방미터당 1인

② 가두리 등 낚시터 이용객의 준수사항

1. 가두리등 낚시터를 관리·운영하는 자가 지정한 종류의 미끼 외의 미끼 사용 금지
2. 음주 및 취사행위 금지
3. 분노·쓰레기 등의 해상투기 금지
4. 야간낚시 금지
5.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가두리등 낚시터를 관리·운영하는 자가 안내하는 사항의 준수

③ 구명동의 착용

④ 시군구청장의 확인 사항

1. 가두리등 낚시터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2.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여부
3. 가두리등 낚시터 이용객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4.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의 준수 여부

15) 사고발생의 보고

① 사고발생 보고 대상

1. 유어장 이용자 또는 승객이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때

2. 충돌·좌초 그 밖에 관리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때

② 보고 접수 후의 조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인명구조활동 등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6) 과태료

유어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유어장을 운영한 경우에는 동법 제10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별표6의 2. 개별기준 하.와 같다.

유어장의 관리 및 지정에 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인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별표 6] <개정 2011.4.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바.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어장관리 규약의 변경 등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2조 제1항제6호	25	50	100
자.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않거나 90일 이내에 어업허가 어선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 추지 않은 경우	법 제102조 제1항제9호	150	300	500
차.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 지 않고 신고어업을 경영한 경우	법 제102조 제1항제10호	25	50	100
카. 신고어업자가 법 제47조제4항에 따 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2조 제1항제11호	20	40	70
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 를 하지 않은 경우. 다만, 「어선법」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은 제외한다.	법 제102조 제1항제12호			
1) 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어 업허가를 받은 경우		20	40	70
2)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 를 한 경우		10	20	30
파.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2조 제1항제12호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70		
2)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한 경우		30		
하.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않고 유어장을 운영한 경우	법 제102조 제1항제13호	50	100	200

3. 낚시어선업법

낚시어선업법은 법률 제10458호, 2011.3.9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해 폐지되어 2012. 9. 10일 시행된다.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의무, 출입항 신고 등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장 낚시어선업에 이관하게 되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법 제4장에 관련되는 하위법령은 종전 「낚시어선업법」 하위법령을 이관하고, 필요에 따라 약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목 적

낚시어선업법은 낚시어선의 이용 및 안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낚시어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어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2) 정 의

“낚시어선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하천·호소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토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동법 제2조제1호). “낚시어선”이라 함은 어선법에 의하여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말한다(동법 제2조제2호). “낚시어선업자”라 함은 어선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서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제3호, 제4호).

동법은 낚시인들에 대한 규제보다는 낚시어선업자들에 대한 불법영업(미신고 영업 행위), 안전에 관한 설비, 낚시어선의 검사, 안전점검, 사고발생보고, 낚시어선업 폐쇄 및 정지이후 위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

법 제8조는 낚시어선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낚시어선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제 4 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승선정원의 12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동의 2. 승선정원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3. 직경 10밀리미터이상, 길이 30미터이상인 구명줄 1개이상 4.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5. 용량 2.5킬로그램이상인 소화기 1개이상 6. 비상용 구급약품 1식 7. 그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어선승객의 안전 및 낚시어선업 영업구역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지정·고시하는 장비 <p>위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등은 「선박안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p>

(4) 낚시어선의 승선정원

법 제10조는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은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흡수선의 위치를 각각 지정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는 항해구역의 종류와 예외적으로 허용되거나 제한되는 항해구역,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p>제18조 (최대승선인원의 산정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은 여객, 선원 및 임시승선자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p> <p>1. 승선인원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자</p> <p>가. 정박 중에 선내 관람 등을 위하여 승선하는 자, 하역·수리작업 등을 위한 작업원, 선원 교대자 등 해당 항에서만 승선하는 자</p> <p>나. 선박의 운항과 관련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도선사, 운항관리자, 세관공무원 및 검역공무원 등</p> <p>다. 1세 미만인 유아</p> <p>2. 여객실, 선원실, 그 밖의 최대승선인원을 산정하는 장소에 화물을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이 차지하는 장소에 상응하는 인원 수를 제외하고 산정</p> <p>3.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경우 1세 이상 12세 미만인 자는 2명을 1명으로 산정</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인원수의 범위에서 최대승선인원의 수를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p> <p>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p>

[별표 6] <개정 2010.11.18>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제18조제3항 관련)

1. 여객실 여객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 가. 침대 1개에 대한 수용 인원은 1명[더블베드(길이 2.0미터 이상, 너비 1.3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의 경우는 2명]으로 한다.
 - 나. 좌석의 수용 인원은 그 면적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눈 수로 한다.

항해구역	항해예정시간	단위면적(제곱미터)	
		통로를 설비하는 여객실	통로를 설비하지 않는 여객실
근 해	-	0.85	1.00
연해 및 평수	24시간 이상	0.85	1.00
	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0.75	0.85
	1.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0.45	0.55
	1.5시간 미만	0.30	0.35
<p>비 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해예정시간”이란 출발항에서 최종 도착항에 이르는 기항지의 정박시간을 포함한 총소요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단위면적은 3등여객정원 산정 시의 단위면적이며, 2등여객정원은 3등여객정원 산정시 단위면적의 5할을, 1등여객정원은 2등여객정원 산정시 단위면적의 5할을 각각 더한 단위면적으로 나눈 수를 그 인원수로 한다. 3. 여객실의 높이가 2.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높이에 비례한 체감률을 적용하여 그 인원을 줄여야 한다. 4. 특등실 및 1등실(침대를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은 1실에 대하여 침대2대(더블 침대를 갖춘 경우에는 1대)를 초과하여 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등실은 1실에 대하여 부속휴게실과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5. 칸막이가 있는 좌석은 좌석 구분마다 칸막이의 안 쪽을 측정한 면적에 따라 좌석의 수용수를 산정한다. 			

다. 의자석의 수용 인원은 그 정면너비를 다음 표에 따른 단위너비로 나눈 수로 하며 그 의자는 균등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항해예정시간	단위너비(센티미터)
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50
1.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45
1.5시간 미만	40
<p>비 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면너비(b)는 그림 1과 같이 측정한다. 	

그림 1

2. 굴절 또는 굴곡된 긴 의자는 그림 2와 같이 걸터앉는 부분과 등판 중 적은 둘레의 치수를 정면너비로 한다.

그림 2

라. 의자석과 좌석이 공존하는 경우에 여객정원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 1) 의자석과 좌석이 그림 3과 같이 공존하고 또한 의자의 앞에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의자의 전면 30센티미터의 범위를 제외한 좌석면적에 대하여 정원을 산정한다. 이 경우 통로는 의자의 전면으로부터 3.7미터 이내에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그림 3

- 2) 의자석과 좌석이 그림 4와 같이 공존하고 또한 의자 앞에 통로를 설치하여 그 통로의 너비가 6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의자석과 좌석에 대하여 각각 정원을 산정할 수 있다.

그림 4

마. 입석의 수용 인원은 그 면적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눈 수로 한다.

항해예정시간	단위면적(제곱미터)
1.5시간 이상 3시간 미만	0.35
1.5시간 미만	0.30

비 고

1. 입석은 높이 1.8미터 이상의 장소로 한정하여 정원을 산정한다. 다만, 출입구 내측 및 계단 하부의 공간(너비가 출입구 또는 계단의 너비의 1.5배 이상이고, 그 길이가 출입구 또는 계단의 너비 이상으로 설치한 공간)에 대하여는 입석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입석을 동일 실내에서 다른 객석과 공존시키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른 그림 3 및 그림 4의 사선 부분을 가상통로로 하여 이를 제외한 잔여면적을 입석면적으로 한다.

바.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의 여객정원은 20센티미터 이상의 견현 및 복원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항해예정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의 면적(제곱미터)을 단위면적 0.3으로 나눈 수를 그 인원수로 한다.

사. 여객정원의 산정에 있어서 그 면적 또는 너비를 단위면적 또는 단위너비로 나누어 인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정수를 택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항해예정시간이 3시간 미만인 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피서객이나 귀성객 등이 폭주하는 특별수송기간 중으로 한정하여 20센티미터 이상의 견현 및 복원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임시로 여객을 증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여객수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개방장소에 대하여는 제1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방법. 이 경우 같은 호 라목 비고 2. 중 “실내”는 “개방장소”로 본다.

나. 여객실내의 입석에 대하여는 제1호마목에 따른 방법

3.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200톤 이상인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선원실의 정원은 그 바닥의 면적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최대정수로 한다.

구분(총톤수)	단위면적(제곱미터)
800톤 미만의 선박	1.85
800톤 이상 3,000톤 미만의 선박	2.35
3,000톤 이상의 선박	2.78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선원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부원이 사용하는 선박의 선원실 바닥면적은 다음 표에 따른다.

구분(총톤수)	단위면적(제곱미터)					
	여객선·특수목적선 외의 선박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			
	1인용	2인용	1인용	2인용	3인용	4인용
3,000톤 미만	4.5	7.0	4.5	7.5	11.5	14.5
3,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5.5	-	3.75	6.60	9.00	12.00
10,000톤 이상	7.0	-				

비고

- 「선원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부원이 사용하는 선원실의 1실당 최대허용인원은 여객선은 4명, 여객선이 아닌 총톤수 3,000톤 이상인 선박은 1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수목적선의 침실은 4명을 초과하여 수용할 수 있으며 바닥면적은 1인당 3.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에 1인용 침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바닥면적을 축소할 수 있다.
-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비고 1호부터 비고 3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의2. 제3호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선원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선장 및 직원용 선원실의 바닥면적(개인용 거실 또는 휴게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표에 따른다.

구분(총톤수)	단위면적(제곱미터)		
	여객선·특수목적선 외의 선박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	
	선박 직원용	운항급 직원용	관리급 직원용
3,000톤 미만	7.5	7.5	8.5
3,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8.5		
10,000톤 이상	10.0		
비 고			
1. 선장 및 관리급 직원에 대하여는 침실에 추가하여 개인용 거실 또는 휴게실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만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2.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비고 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선원실의 정원은 침대수와 침대 외의 좌석의 면적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최대정수의 합으로 한다.

선박의 구분	단위면적(제곱미터)
연해구역(항해소요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1.10
연해구역(항해소요시간이 12시간 미만인 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0.55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0.45

6. 선원실은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7. 임시승선자에 대한 정원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여객”은 “임시승선자”로 본다.
8. 임시승선자 중 선원가족은 선원실의 정원산정기준을 적용한다.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소형선박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6호에 따른 임시승선자를 승선시키는 선박(이하 이 호에서 “소형선박등”이라 한다)의 최대승선인원 산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소형선박등의 최대승선인원은 선원실, 여객실 및 임시승선자의 거실 등의 정원을 합한 인원수로 한다.

$$\frac{353 \times (0.55L \cdot B \cdot D)}{1000} + 3$$

이 식에서

L은 선박의 길이(미터)

B는 선박의 너비(미터)

D는 선박의 깊이(미터)

나. 삭제 <2010.11.18>

다. 소형선박등의 선원실, 여객실 및 임시승선자의 거실의 정원 산정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를 준용하며, 정수를 인원수로 한다. 다만, 선박의 구조·규모 및 항해상의 조건,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선원실 등이 필요 없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소형선박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정한 인원수의 합계로 할 수 있다.

- (1) 의자석의 수용수는 그 정면 너비(단위 : 미터)를 0.40으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
- (2) 입석의 수용수는 그 면적(단위 : 평방미터)을 0.30으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

(5)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의무 등

법 제11조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안전운항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약물중독 또는 음주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중독 또는 음주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으로 하여금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음주상태의 기준>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제 5 조 (음주상태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혈중알콜농도 0.08퍼센트를 말한다.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형 낚시어선의 경우에 승객으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형 낚시어선의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소형 낚시어선의 범위 등>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p>제 5 조의2 (소형 낚시어선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형 낚시어선”이라 함은 총톤수 3톤 미만의 낚시어선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어선의 형태, 추진기관의 최대속력 및 주된 영업장소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향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낚시어선을 제외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사항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법 제11조제3항에서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정원을 초과하여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켜서는 아니되고, 제4항에서는 낚시어선업자는 당해 낚시어선의 승선정원과 제 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고시하는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이 잘 볼 수 있게 낚시어선에 게시하여야 한다.

<승선정원 등의 게시방법>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p>제 6 조 (승선정원 등의 게시방법) 낚시어선업자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의 승선정원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p>

[별표 1] <개정 2006.1.27>

낚시어선의 승선정원 및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제5조 관련)

가. 게시방법

- (1) 재질 : 아크릴 등 변색되지 아니하는 재질
- (2) 색상
 - (가) 글씨 : 흑색
 - (나) 바탕 : 승선정원 - 백색
승객준수사항 - 노란색

(3)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

당해 낚시어선의 부착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하되, 누구나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래의 (예시)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

나. 게시장소

당해 낚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

(게시방법의 예시)

승선정원 ○○ 명
승객준수사항 ※ 기재내용 :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고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표기함. 1. 2. · ·

(6) 행정처분기준

법 제20조에서는 시장·군수는 낚시어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쇄 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보전(被害補填)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제11조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별표2에서 정하고, 행정처분의 통지는 행정처분통지서에 의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낚시어선업자에게 행정처분의 통지를 한 때에는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별 표 2] <개정 1999.3.23>

행정처분기준(제11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월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기간까지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라.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가. 허위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영업폐쇄				
나.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 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3호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7) 과태료

법 제23조는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폐업한 자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동조제1항),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자, 낚시어선의 승선정원 또는 고시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1.4.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1호	3	6	10
나.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1호	3	6	10
다.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낚시어선의 승선정원 또는 고시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2호	3	6	10
라.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2호	10	20	30
마. 법 제21조의3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을 폐업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3호	30		

4. 수산자원관리법

(1)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금지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서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장소·기간·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어구 또는 방법에 관한 제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어구 또는 방법에 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 목 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2) 낚시행위 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천·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낚시금지구역은 일정기간 낚시행위가 전면금지되는 지역을 말하고, 낚시제한구역은 원칙적으로 낚시를 허용하되, 낚시방법·시기·어종 등을 규제하는 지역을 말한다.

동조 제1항은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낚시의 방법·시기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조 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낚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 지정시 고려사항

한편, 동법 시행령 제5조(낚시금지구역의 지정 등) 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하천(「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을 제외한다)·호소에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용수(용수)목적
2. 오염원 현황
3. 수질오염도
4. 낚시터 인근에서의 쓰레기 발생현황 및 처리여건
5. 연도별 낚시인구 현황
6. 서식 어류의 종류·양 등 수중생태계 현황

(4) 지정사항 고시

한편, 동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1.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명칭 및 위치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낚시의 방법·시기 등 제한사항(낚시제한구역에 한한다)
3. 법 제82조제2항제1호 또는 동조제3항제2호에 따른 낚시금지 또는 제한사항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의 부과 금액·납부방법 및 납부장소

- 5. 낚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방법
- 6. 그 밖에 낚시금지 또는 제한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동제 제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그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5) 과태료

동법에서는 낚시금지 및 제한구역에서의 낚시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동법 제82조 제2항에서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금지구역 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82조 제3항에서는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6. 자연환경보전법

동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낚시행위와 관련된 내용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특정어종들의 낚시행위금지라고 할 수 있는데, 동 지역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로서 중요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2호).

<표 5.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구분>

구분	내용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구 분	내 용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생태·경관전이(轉移)보전구역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동법 제15조(생태·경관보전지역등에서의 행위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생태계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중 낚시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은 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땃·울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주입)하는 행위이다(제15조 제1항 제1호).

7. 야생동식물보호법

(1) 목 적

동법은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 등의 금지

동법 제14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는 제1항 본문에서 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방사(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훼손 및 고사(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폭발물·땃·창애·울무·함정·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중에서 어류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법 제2조 관련).

○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 급

번호	종명
1	감돌고기 <i>Pseudopungtungia nigra</i>
2	꼬치동자개 <i>Pseudobagrus brevicorpus</i>
3	미호종개 <i>Iksookimia choii</i>
4	얼룩새코미꾸리 <i>Koreocobitis naktongensis</i>
5	통사리 <i>Liobagrus obesus</i>
6	흰수마자 <i>Gobiobotia naktongensis</i>

○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I 급

번호	종명
1	가는돌고기 <i>Pseudopungtungia tenuicorpa</i>
2	가시고기 <i>Pungitius sinensis</i>
3	꾸구리 <i>Gobiobotia macrocephala</i>
4	다목장어 <i>Lampetra reissneri</i>
5	돌상어 <i>Gobiobotia brevibarba</i>
6	독중개 <i>Cottus poecilopus</i>
7	모래주사 <i>Microphysogobio koreensis</i>
8	묵납자루 <i>Acheilognathus signifer</i>
9	임실납자루 <i>Acheilognathus somjinensis</i>
10	잔가시고기 <i>Pungitius kaibarae</i>
11	칠성장어 <i>Lampetra japonica</i>
12	한독중개 <i>Cottus hangiongensis</i>

8. 하천법

동법은 하천의 우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과 하천의 자연친화적인 정비·보전을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하천법 제46조제6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9. 수도법

동법은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동법 제5조(상수원보호구역지정 등)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수도법 시행령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제1항은 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2.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3. 행락·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
4.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어로행위를 제외한다.
5.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6.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일반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동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즉,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 제4호에서는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0.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낚시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동법 제35조에는 명승·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천연기념물 지정 어종은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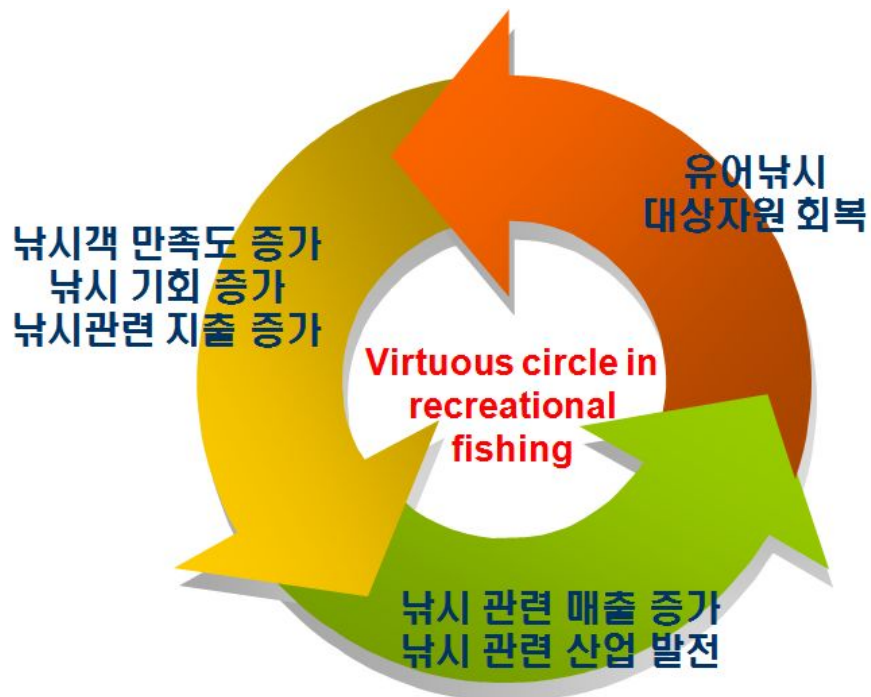
○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천연기념물(어류 7종)

- ① 제주도 무태장어서식지(천연기념물 제27호)
- ② 정암사의 열목어서식지(천연기념물 제73호)
- ③ 봉화석포면의 열목어서식지(천연기념물 제74호)
- ④ 한강의 황쏘가리(천연기념물 제190호)
- ⑤ 금강의 어름치(천연기념물 제238호)
- ⑥ 무태장어(천연기념물 제258호)
- ⑦ 어름치(천연기념물 제259호)

제 2 절 주요국의 낚시관련 법률과 사례

1. 미국의 유어낚시 선순환 사례 및 시사점

(1) 유어낚시 및 관련 산업의 순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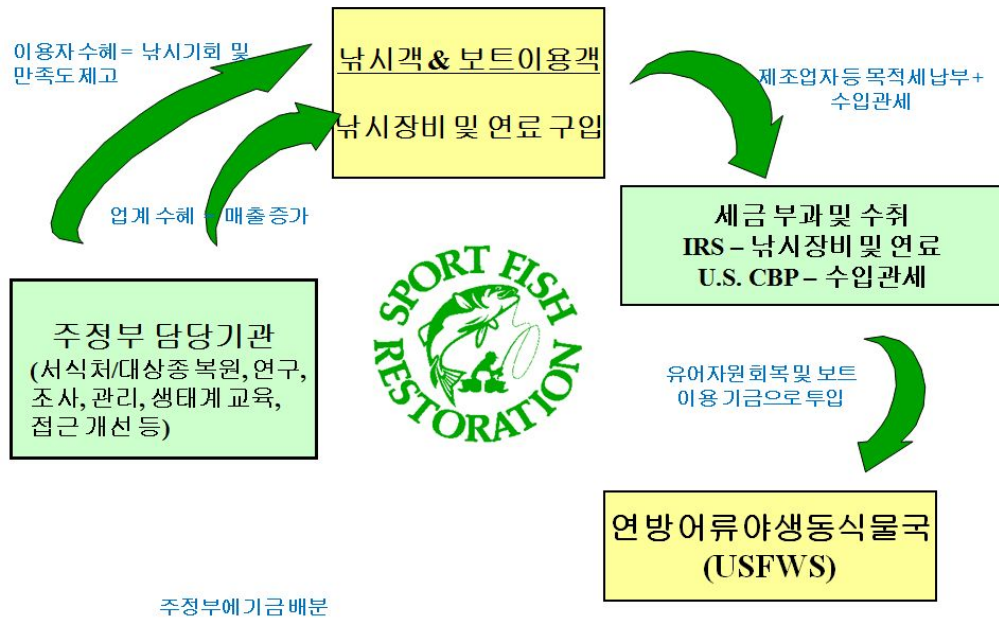
(2) 유어자원회복프로그램(Sport Fish Restoration Program)

「유어자원회복연방지원법」에 의거 1950년에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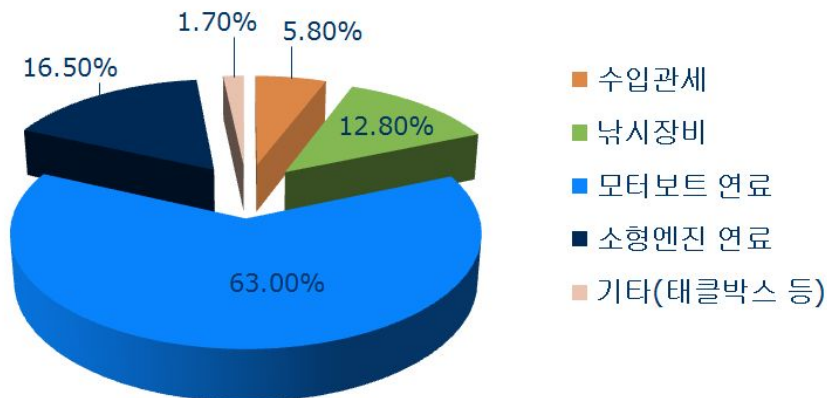
Federal Aid in Sport Fish Restoration Act (Dingell-Johnson Act)

-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자원보존 프로그램 중의 하나
- 목적세를 통해 수취된 세금을 낚시 관련 부문에만 재투자토록 규정하여
- 유어낚시 부문 투자 활성화 → 유어낚시 및 보트 이용 활성화
- ※ 유어자원회복 위한 기금 설치 : 수생생물자원신탁기금. 1984 WB 개정
- 주정부 세수인 낚시면허세의 타 부문 전용 방지(연방 지원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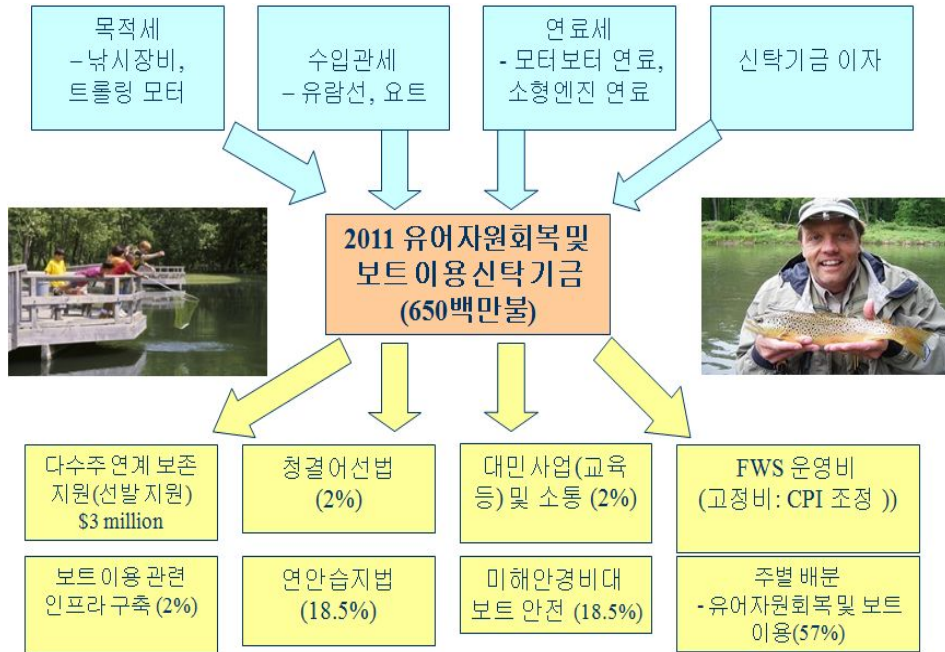
1) 유어자원회복기금의 선순환 구조



2) 유어자원회복(SFR) 프로그램 목적세 세원(2010년)



3) 유어자원회복(SFR) 목적세 세율 및 배분(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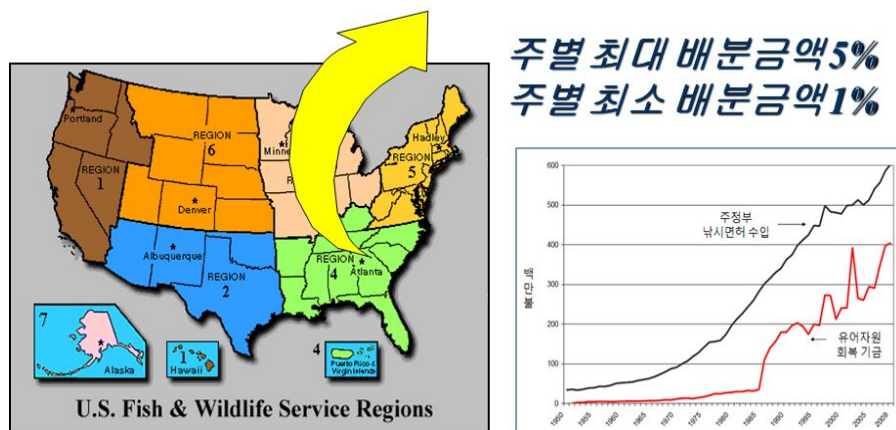


4) 기금의 주정부 배분 산식

주별 면적(40%) + 낚시면허 구입한 낚시객수(60%)

※ 연방 지원 조건 : 주별 낚시면허세 유어자원 관련 프로그램에만 사용

주별 면적(40%) + 낚시면허 구입한 낚시객수(60%)



※ 연방 지원 조건 : 주별 낚시면허세 유어자원 관련 프로그램에만 사용

주정부 배분액 사용 가능 분야

FY 2011 주별 배분액 \$364.7 백만 불

(총예산의 57%) :

- 낚시 관련 연구 및 조사
- 산란장 복원 및 유지
- 감소하는 유어 대상종 재도입
- 보트 램프 및 낚시 잔교(pier) 건설
- 수생태계 교육
- 서식처 복원
- 보트 이용 접근 개선
- 관련 토지 매입
- 낚시 접근 개선
- 도시민 낚시 프로그램

5) 보트 이용 관련 인프라 구축 그랜트 프로그램 (2%)

1) 기본 배정 금액 (Tier I)

주별 기본 배정 : \$100,000불

'11년에 \$2.7백만 불이 29개

주에 배분

2) 경쟁적 배분 (Tier II)

'11년에 \$13.5백만 불이

11개 주 16개 프로젝트에 배분

- 예산 배분 가능 시설은 트레일러로 이동 불가능한 26피트 이상의 보트를 위한 시설임

(2) 청결어선법(Clean Vessel Act)(2%)

Provides funding for:

- 보트 오폐수 펌프아웃 및 집하 시설
- 보트 오폐수 처리 관련
- 교육 프로그램 : '11년에 \$12백만 불을 25개 주에 배분

(3) 연안습지보존 관련 그랜트 프로그램

(National Coastal Wetlands Conservation Grant Program)(15% of the 18.5% from the CWA)

'11년, \$19.5백만 불이 어류자원 회복에 유익한 24개 연안생태계 보존 및 회복 프로그램에 사용 (12개 주 5,900에이커 대상)

(4) 다수주 연계 보존 그랜트 프로그램

- 2000년에 유어자원회복프로그램 개정법에 따라 설립
- 연간 3백만 불 지원
- 여러 주의 어류야생동식물국에 의해 협력적으로 운영
- 여러 주에 걸친 혹은 국가적 수준의 우선순위를 가진 주정부 어류야생동식물국에 대한 프로젝트 예산 배분
 - 국가어류서식처행동계획 이행
 - 대서양연안 어류서식처 파트너십
 - 서부지역 토종송어계획

(5) 미국스포츠피싱협회

1) 조직 및 구성

- 미국스포츠피싱협회(ASA) 조직 : 1933년
(연방정부에서 유어낚시 진흥을 위해 업계의 조직화를 권장)
- 총 23명 근무, 협회장은 이사회에서 전문가를 선정하여 고용
- 재원 : 낚시박람회 수익, 회비, 낚시정보 웹사이트 운영 수익(낚시객 기부금)
- 회원 : 낚시대, 릴 제조업자 → 1994년 이후 제조업자, 유통업자, 소매업자, 정부 기관으로 확대
- 현재 650명 회원 :
 - 직접 장비(대, 릴) 제조업체 301, 간접 장비(의류 등) 제조업체 122
 - 중개상·도소매업체 102, 언론사 39, 연방 및 주정부 기관 29, 보트 제조업체 13

2) 미국스포츠피싱협회의 활동

- 주요 활동 : 낚시산업 업계의 이해 대변, 회원의 비즈니스 및 네트워킹 활성화
- 이해 대변 :
 - 의회, 연방정부, 주정부와 유대관계 형성 통해 정부 정책 수립과정에서 낚시업계의 이해 대변
 - 로비활동 : 관련 규제에 대해 회원 및 낚시객에게 정보 제공, 의사 표명 독려
- 비즈니스 및 네트워킹 활성화
 - 세계 최대의 국제 낚시용품무역박람회(ICAST) 개최
 - 낚시정상회의(Sportfishing Summit) : 매년 10월 개최, 업계 정보 교류의 장

※ 정부의 업계에 대한 직접 지원 부재, 직접적 지원은 업계의 도덕적 해이 및 독립성 약화를 초래할 것(협회장)

(6) 가족형 낚시공원 및 낚시리조트 사례

- 낚시산업 부가가치 확대 : 낚시인구의 저변 확대 필요
남성 위주→ 여성과 어린이가 동참하는 가족형 중심으로 변모 필요
- 미국은 가족형 중심의 낚시공원 및 낚시리조트를 지향
 - 낚시공원 : 주립공원 중심으로 발달
낚시잔교(pier), 캠핑장(텐트용 및 캠핑카용), 주차장, 화장실, 벤치 등 편의 제공
 - 낚시리조트 : 민간 중심으로 발달
고급형 : 낚시터, 골프, 사냥, 수영장, 마리나, 고급 호텔 등으로 구성
중저가형 : 낚시터, 캠핑장, 수영장, 산책로, 피크닉 테이블, 그릴 등 조성

(7) 시사점

- 유어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감소 및 낚시활동 만족도 감소
(낚시 수요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
 - 유어 대상종 자원회복 강화,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교육, 홍보 강화) 낚시 환경 조성 위한 정책적 지원 미흡
 - (유어낚시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부족 및 투자 미흡)
 - 안전하고 쾌적한 낚시환경 조성
 - 가족형 낚시 수요 대응 및 낚시저변 확대
 - ★ 재원 확보 방안 : 수산발전기금 유어부문 지원 확대,
유어낚시 발전 기금 또는 자조금(업계와 낚시객 후원) 조성
업계의 조직력 취약 및 활동 미흡
 - 근본적으로 업계 스스로의 조직력 강화 노력 필요
 - 정책 결정과정에서 업계 적극 참여 유도(통일된 목소리로 상생의 길 모색)

(낚시면허제 운영, 일반적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법률, 특정어족 및 특정지역의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낚시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의 범주로 각 법률 검토)

2. 일본 등의 사례

(1) 일 본

- 일본의 낚시 인구는 약 5천만명으로 추산되며, 그 중 바다낚시인은 약 3천7백만 명, 내수면낚시인은 약 1천3백만명으로 조사됨
- 어업법과 수산자원보호법에 따라 해수면 유어에 대해서는 도도부현어업조정규칙으로, 내수면 유어에 대해서는 내수면어업조정규칙으로 규율하고 있음
 - 내수면에 해당하는 강 낚시의 경우 유어증 판매소에서 발급하는 유어증(遊漁証)을 발급받아 유어 낚시권(Fishing Ticket)을 취득하여 낚시를 하여야 함
 - 일일면허와 연간면허로 구분되며, 유어증 수익금은 민간 어협에 귀속됨
- 일본의 40개 도도부현 중 바다낚시에서 전면 밀밥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 지역은 도쿄도를 포함한 10개 지역, 전면 어선 밀밥낚시를 금지하고 있는 지역은 효고현을 포함한 3개 지역임

(2) 영 국

- 1987년부터 0.06 ~ 28.35g 납성분이 함유된 낚시추의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함

(3) 캐나다

- 국립공원 지역에서 50g 이하 낚시용 납추 및 납 함유 지그 사용을 금지함
- British Columbia 주 및 Prince Albert National Park에서는 낚시를 위하여 어떠한 물질도 물에 투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nets, traps, spear guns 등을 사용하여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함

(4) 뉴질랜드

- 1987년부터 납 함유 낚시추로 인한 물새의 납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28.3g 이하 낚시용 납추 사용 금지하고 있음

제 4 장 유해 낙시도구 제한 기준 제시

제 1 절 수질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1. 환경기준

(1) 해역 환경기준 - 생활환경

해역 환경기준 - 생활환경			
등 급	총 인 (mg/L)	총 질소 (mg/L)	총대장균군 (총균수/100mL)
I	0.03 이하	0.3 이하	1,000 이하
II	0.05 이하	0.6 이하	1,000 이하
III	0.09 이하	1.0 이하	

(2) 해역 환경기준 - 사람의 건강보호

등 급	항 목	기 준(mg/L)
전 수역	납(Pb)	0.05
	수은(Hg)	0.0005
	아연(Zn)	0.1
	구리(Cu)	0.02
	비소(As)	0.05
	카드뮴(Cd)	0.01
	6가크롬(Cr6+)	0.05
	음이온계면활성제(ABS)	0.5

(3) 호소 환경기준 - 생활환경

등급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총대장균군 (총균수/100mL)	총 인 (mg/L)	총 질소 (mg/L)
I	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보전	50 이하	0.010 이하	0.200이하

제 4 장 유해 낙시도구 제한 기준 제시

등급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총대장균군 (총균수/100mL)	총 인 (mg/L)	총 질소 (mg/L)
Ⅱ	상수원수 2급 수산용수 1급 수영용수	1,000 이하	0.030 이하	0.400 이하
Ⅲ	상수원수 3급 수산용수 2급 공업용수 1급	5,000 이하	0.050 이하	0.600 이하
Ⅳ	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	-	0.100 이하	1.0 이하
Ⅴ	공업용수 3급 생활환경보전	-	0.150 이하	1.5 이하

(4) 호소 환경기준 - 사람의 건강보호

	중금속	기 준
전 수역	연(Pb) 수은(Hg) 카드뮴(Cd) 비소(As) 6가크롬(Cr6+) 음이온계면활성제(ABS)	0.1mg/L 이하, 검출되어서는 안됨 0.01mg/L 이하 0.05mg/L 이하 0.05mg/L 이하 0.5mg/L 이하,

2. 수질 부영양화 평가기준

우리나라의 부영양화 평가기준은 Vollenweider의 총인과 총질소를 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클로로필a 기준은 OECD와 미국 EPA를 참고로 하고 있다				
한국 기준 Vollenweider의 영양상태 구분에 준함			OECD 기준	미국 EPA
영양 상태	총인 (mg L ⁻¹)	총질소 (mg L ⁻¹)	클로로필a (mg m ⁻³)	클로로필-a (mg m ⁻³)
극빈영양	> 0.005	< 0.20	< 1.0	< 7

영양 상태	총인 (mg L ⁻¹)	총질소 (mg L ⁻¹)	클로로필a (mg m ⁻³)	클로로필-a (mg m ⁻³)
빈중영양	0.005~0.01	0.20~0.40	< 2.5	
중영양	0.01~0.03	0.30~0.65	2.5~8	7~12
중부영양	0.03~0.10	0.50~1.50	8~25	
부영양	> 0.10	> 1.50	> 25	> 12

자료 : 환경처(1994)

3. 하·폐수처리 방류수질 기준

구 분	방류수질 ()동절기					
	BOD mg/L	COD mg/L	SS mg/L	T-N mg/L	T-P mg/L	대장균군수 개/ml
법적수질기준	10	40	10	20 (60)	2 (8)	3,000
부영양기준				> 1.50	> 0.10	

출처 : 2011.02.01 안양시 하수처리장

4. 낚시 구성원의 환경오염·개선

구 성	낚시인	⇔	낚시터관리자	⇔	떡밥·조구 (사업자)	⇔	정부·기관 (어자원관리)
오염 주체	직접		직접		직접		간접·직접
현재 관리	-		-		-		제한적방역
관리 개선	책임부과 (징벌)		책임부과 (징벌)		책임부과 (징벌)		검역강화 책임부과 조직확대 기능확대 관리강화

제 2 절 납시 추 및 미끼 등의 기준

1. 납시 추 및 미끼의 위해성 - 환경오염

(1) 개 요

납 추 → 저 지능아 출산, IQ감소, 신장병, 적혈구과과피 등

미끼(집어제) → 부영양화 → 어류 번식장애 및 폐사 → 수인성 질병 → 오리 쌀
영농 불가능

(2) Priority List of Hazardous Substances(CERCLA 2001)

CERCLA Priority List of Hazardous Substances(2001)			
No	순 위	물질명	비 고*
1	1	Arsenic	납시추, 미끼(집어제), 지렁이**
2	2	Lead	납시추, 미끼(집어제), 지렁이
3	3	Mercury	미끼(집어제), 지렁이
4	7	Cadmium	미끼(집어제), 지렁이
5	73	Zinc	납시추 ,미끼(집어제), 지렁이
6	94	Uranium	납시추
24	129	Copper	납추 미끼(집어제)
자료 : 미국 독성물질질병등록청(ATSDR)			
* 발표자 주 **하폐수슬러지 사용 사육			

(3) 납시관련 건강 위해 인자

강력한위해인자(A 급)

납 : 납시 추, 미끼
수은, 비소, 납 : 지렁이(하·폐수슬러지 사용)

중급위해인자(B 급)

유기인및질소 : 떡밥, 집어제
부유 및 침전물 : 떡밥, 집어제

2. 낚추 및 집어제 규제

(1) 캐나다

1) 불법 낚시 행위

미늘낚시바늘 사용 또는 한 지점에서 하나 이상의 미늘낚시바늘 사용 후라이 낚시바늘 1개 이상을 1개 낚시줄에 부착하는 행위.

고기유인용 전기 등을 사용하는 행위

살림그물 등(dip nets, minnow nets, gill nets, cast nets)의 사용.

1개 이상의 낚시줄을 부착한 낚시 도구의 사용 행위

(호수에서 1개 배에 한 사람이 낚시 하는 경우는 제외)

잡은 고기의 살해 및 폐기하는 행위.

잡은 고기를 악독한 방법으로 놓아주는 행위.

스포츠 피싱에서 잡은 고기의 판매, 매입 또는 물물교환 및 판매, 매입 또는 물물교환을 시도하는 행위

스포츠 피싱에서 잡은 고기의 보관, 이송 및 가정 등에서 기르는 행위

2) 잡은 고기의 이송 및 수출

감독관 : 잡은 고기의 개체 수 및 크기 점검

1. 고기를 잡은 경우 :

- 1) 낚시면허증 소지(이송 중)
- 2) 허가 지역 범위 내의 이송
- 3) 잡은 고기의 종류 확인, 마리 수 및 크기

2. 잡은 고기의 타인에게 양도 시 :

- 낚시인의 다음사항을 기재한 증서 보관 :
 - 1)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낚시면허증 번호 ;
 - 2) 잡은 장소 및 일시 ;
 - 3) 고기 받은 장소 및 일시, 마리 수, 종류, 크기, 양수인의 성명 및 주소.
 - 4) 타 관할지역으로 이송 시 감독관 또는 세관원의 점검 및 확인서 소지

3. 잡은 고기의 타인이 식용 시 :

- 식용 전까지 고기를 잡은 낚시인의 서명 날인 및 다음 사항을 기재한 증서의 보관.
 - 1) 고기 잡은 낚시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잡은 고기의 종류, 마리 수, 크기 등.

3) 낚시 관련 법적 형벌

- 벌금(관련법 위반) : 1) \$100,000,
2) 12 개월 징역, 또는
3) 벌금 및 징역 동시 적용

감독관의 권한 : 불법 어류 포획 시 :

- 벌금 티켓 발행
- 낚시인 체포 및 강제구인
- 고기, 장비, 배, 차량 등 모두 압류 (면책)

4) 납추사용 금지

국립공원 : 1997년부터 50그램 이하의 납시용 납추 및 납이 함유된 지그 사용 금지
Regulations Restricting Lead Fishing Tackle : 납을 중량으로 1% 이상을 함유하고, 길이 5cm 이하인 50그램 이하의 납시 추 및 지그의 수입, 제조 및 판매를 금지

온타리오주 : 납추를 무공해 추(주석 및 기타 대체 용 추)로 1:1 로 무상으로 교환

5) 집어제 사용 금지

British Columbia 주 :

- ▶ 2006 낚시 대상어를 유인(집어)하기 위하여 어떠한 물질도 물에 투척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 ▶ 미끼로 고기 알(1 kg 이하)을 소지할 경우 구입 영수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 ▶ 미끼로 사용하는 수서곤충은 동일 낚시터에서 잡은 것에 한하며,
- ▶ 타 지역의 민물 곤충의 사용을 금지 하고 있으며,
- ▶ 활어 및 선어도 미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립공원 : 공원 내 수면에서는 어떠한 음식, 죽은 고기, 곡물, 건조사료 기타 음식 물을 투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낚시 미끼로 살아있는 고기, 죽은 고기, 죽은 고기의 일부 및 고기 알 등을 소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Nets, traps 및 spear guns 등의 방법으로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 미 국

1) 납추 사용 금지

- 뉴욕주 : 2001년 5월 7일 0.5 온스(약 12.5그램) 및 그 이하의 납추 사용금지
- 메인주 : 2006년 0.5온스 (약 12.5그램) 납추 판매 금지
- 미시간주 : 2009년 1월1일부터 납추 등 납을 함유한 낚시 용품의 사용을 금지
- 국립공원 : 2004년부터 1.75온스 미만의 납추와 납으로 만든 지그(jig) 및 루어의 사용을 금지

2) 집어제 사용 규제

- 내무성 : 2002-2003년 고기를 유인(집어)하기 위하여 식품, 고기알, roe 및 기타 어떠한 물질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동 공원에서 잡은 벌레나 곤충의 사용 금지
- 메인주 : 2005 - March 31 낚시 대상 고기를 유인(집어)하기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음식, 뼈, 죽은 물고기 및 음식물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미끼 용기로 스티로폼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으며, 고기 몸체에 꼬리표(tag), fin clip 등 기타 표지를 다는 행위를 금지
- 국립공원 : 미끼(고기, 고기의 일부분, 검역처리 안된 고기 알, 곤충, 지렁이 등)의 사용을 금지

(3) 영국, 뉴질랜드, 일본, 독일

납추 규제

- 영국 : 1987년부터 0.06 그램 이상 28.35 그램 이만의 납 성분이 함유된 낚시추의 판매 및 사용을 금지
- 뉴질랜드 : 1987년부터 납 성분이 함유된 낚시추로 인한 물새의 납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28.3그램 이하의 낚시용 납추 사용을 금지
- 일본 : NPO법인 일본낚시환경보전연맹은 홈페이지에 탈연(脫鉛)은 물론 탈유기가 소재(脫有機可塑劑)를 주장하고 있다
- 독일 : 납추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정 없으나, 민간단체인 일부 낚시 협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용 제한하고 있다.

(4) 시사점

1) 낚시도구

항 목	내 용	비 고
낚시 추	▶ 비중 10 이상 친환경 낚시 추 사용 지원 ▶ 납추 및 유해금속 함유 낚시추 사용 금지	수산마크 50% 이상 지원
웜 루어	▶ PVC제품은 가소제 프탈레이트 사용 금지 ▶ 실리콘 제품 권장	프탈레이트는 환경 홀몬임
루어	납 등 유해금속 사용 금지	
낚시바늘 (민물)	▶ 낚시대 1대당 미늘없는바늘1개 ▶ 납, 크롬, 니켈 등 유해 및 내부식성 도금 금지	수중 쉽게 부식됨으로 2차 위험성 경감
살림그물 (민물)	사용금지	어자원보호

2) 미끼(떡밥)

항 목	내 용
미끼 (떡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제 (인지 제도 : 탈세 방지) - 제조 및 수입업체 ▶ 징벌적 부과금(일반 미끼 가격의 100% - 오염자 부담 원칙) (부과금 이용 : 낚시 대상어 양식, 낚시지원 및 환경관리) ▶ 환경친화 형 미끼 기준 설정(예, 수산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환경미끼 사용 지원(판매가의 50% 이상) (2) 유기인 및 유기질소 : 쌀(백미) 기준 이하 (3) 식용곡물, 식품첨가물 및 식용 천연 식물성 재료 사용 (4) 미끼:물 사용비율(중량) 1:3 이상(미끼 사용량 감소 효과) (5) 녹조 기준(미끼 1g +물 1ℓ, 25℃ 배양, 클로로필a기준 설정) (6) 반죽(최적) → 낚시바늘에 매달고 수중 30분 이상 매달릴 것 (7) 사용량 제한(50g/1일 이하 ; 2g(반죽, 직경1.5cm)/1회 이하) ▶ 수입품의 검사 항목(방사선, 항균제, 홀몬제, 중금속, 병원체 등)
집어제	민물 - 사용 금지, 바다 - 크릴새우를 친환경 집어제로 점진적 대체
생미끼	지렁이 (하·폐수 슬러지 사용 사육) 지렁이 사용 금지 갯지렁이 : 수입품 및 타지역 품의 사용 제한 및 점진적 사용금지

제 5 장 낚시관리 및 육성법 하위 법령 기준 마련

1. 출항의 제한 기준

(1) 내 용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4조제1항은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기상과 해상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고려하여 낚시어선업자·선원·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으며(제1항), “출항제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현행 「낚시어선업법」 제12조의3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이전한 것으로서, 차이가 있다면 낚시어선업법에서는 출항제한기준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출항제한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낚시어선업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출항의 제한 기준 등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는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한기준을 설정하여 두고 있다.

1. 「기상업무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강풍·풍랑·해일·태풍의 주의보 또는 동 정보가 발령된 경우
2. 안개 등으로 인하여 해상에서의 시계(視界)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3. 그 밖에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이 해상 상황의 급작스런 악화 등으로 인하여 낚시어선의 출항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3) 낚시관리 및 육성법으로의 도입 검토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는 법 제12조의3의 위임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현행 내용을 그대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하위법령에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반영하여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다.

1) 제1호의 검토

제1호에서는 「기상업무법 시행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상업무법 시행령」은 「기상업무법」이 2005. 12. 30일 법률 제7804호로 전부개정¹⁾되어 「기상법」으로 제명이 바뀌고, 규정내용에도 다수의 변화²⁾가 있었다.

먼저, 법령의 제명 및 조에 관해서는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정전 「기상업무법시행령」 제6조는 「기상법시행령」 제8조가 되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 개정전 강풍·풍랑·해일·태풍 중에서 해일은 폭풍해일과 지진해일로 세분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안개에 관한 주의보와 경보 사항이 추가되었다.

또한, 개정전의 규정 순서는 낚시어선업법시행규칙과 같이 강풍·풍랑·해일·태풍의 순서였으나, 개정후에는 순서에 변화가 있으나 내용상으로 큰 문제가 없어 그대로 규정해도 무방한 것으로 검토된다.

2) 제2호의 검토

안개의 경우에는 개정된 기상법시행령에서 특보를 하도록 하고 있어, 제2호에 달리 규정할 필요가 그리 크지는 않다고 생각되지만, 보다 강화되거나 낚시어선의 특성에 특화된 제한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해상 시계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기존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제안기준

제○○조 (출항의 제한 기준 등)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기상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강풍·풍랑·해일(폭풍해일, 지진해일)·태풍·안개의 주의보 또는 동 경보가 발령된 경우
2. 안개 등으로 인하여 해상에서의 시계(視界)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3. 그 밖에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이 해상 상황의 급작스런 악화 등으로 인하여 낚시어선의 출항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1) 전부개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최근의 국내·외적인 악기상 및 지구 온난화 현상 등으로 인한 기상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재난방송 주관기관에게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새로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기후분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기후분야의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상업무법」을 국가기상행정예 관한 기본법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제명을 「기상법」으로 변경하고,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률안 개정이유)

2)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기상업무법」에서 「기상관측표준화법」을 분리하여 제정하게 되었다.

<표 기상업무법 대비표>

개정전	개정후
<p>기상업무법 제14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을 위한 예보 및 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를 위한 예보 및 특보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관계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특보를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보 및 특보의 종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기상법 제14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기상업무법시행령 제 6 조 (일반인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상등에 관한 예보는 기온·강수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다음 각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예보의 세부 종류·내용 및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이를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3일 이내 2. 중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3. 장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1일 이상 <p>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상등에 관한 특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상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해당지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이를 행한다. 이 경우 특보의 발표기준에 관한</p>	<p>기상법시행령 제 8 조 (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예보는 기온·강수 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예보의 세부 종류·내용 및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6시간 이내 2. 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3일 이내 3. 중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4. 장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1일 이상 <p>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해당 지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특보의 발표기준에</p>

개정전	개정후
<p>사항은 기상청장이 이를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강풍</u> 2. <u>풍랑</u> 3. 호우 4. 대설 5. 건조 6. <u>해일</u> 7. 한파 8. <u>태풍</u> 9. 황사 	<p>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호우 2. 대설 3. <u>폭풍해일</u> 4. <u>지진해일</u> 5. <u>태풍</u> 6. <u>강풍</u> 7. <u>풍랑</u> 8. 황사 9. 건조 10. 한파 11. 폭염 12. <u>안개</u>
<p>기상업무법시행령 제 8 조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해상예보 및 해상특보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③ (생략)</p>	<p>기상법시행령 제 9 조 (선박에 대한 예보 및 특보) 법 제 14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해상예보 및 해상특보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2. 전문교육의 실시

(1) 법률상 전문교육 실시 내용

<p>제47조 (교육·홍보) ①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낚시인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3.9.10] 제47조제1항, 제47조제3항</p>
--

낙시터업자와 낙시어선업자는 낙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및 법령상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법 제1항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전문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제2항).

(2) 전문교육 등에 관한 다른 법령의 유형

1) 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에 지정 위탁

법률에서 정하는 단체 등에 전문교육을 위임하는 경우로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은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호에서는 승강기교육기관으로 법 제15조의3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09. 3. 1] [법률 제9384호, 2009. 1.30, 일부개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3.29] [대통령령 제22723호, 3.29, 일부개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3.29] [행정안전부령 제205호, 2011. 3.29, 일부개정]
제16조의2 (승강기의 운행 관리자) ① 승강기 관리 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운행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승강기관리교육 기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의3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2. 승강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24조의2 (승강기관리교육 기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의3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2. 승강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p>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09. 3. 1] [법률 제9384호, 2009. 1.30, 일부개정]</p>	<p>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3.29] [대통령령 제22723호, 3.29, 일부개정]</p>	<p>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3.29] [행정안전부령 제205호, 2011. 3.29, 일부개정]</p>
<p>③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관리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④ 승강기의 운행관리자의 직무,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9.3.16]</p> <p>제24조의3 (승강기 운행관리자의 직무 범위)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승강기 운행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의 고장·수리 등에 관한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승강기 인명사고 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승강기 사고 시 사고 보고에 관한 사항 6.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p>[전문개정 2009.3.16]</p> <p>제24조의4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 등) ①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은 다음</p>	<p>[전문개정 2009.3.16]</p>

<p>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09. 3. 1] [법률 제9384호, 2009. 1.30, 일부개정]</p>	<p>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3.29] [대통령령 제22723호, 3.29, 일부개정]</p>	<p>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3.29] [행정안전부령 제205호, 2011. 3.29, 일부개정]</p>
	<p>각 호와 같다. 1.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2. 승강기에 관한 법령 등 에 관한 사항 3. 승강기의 운행 및 취 급에 관한 사항 4. 화재, 고장 등 긴급사 항 발생 시 조치에 관 한 사항 5. 인명사고 발생 시 조 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승강기의 안 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기간 및 시간은 1일 8시 간 이내로 한다. ③ 그 밖에 승강기관리교 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전문개정 2009.3.16]</p>	

②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p>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 2010. 5.25] [법률 제10312호, 2010. 5.25, 일부개정]</p>	<p>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4. 6] [대통령령 제22888호, 2011. 4. 6, 일부개정]</p>	<p>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8.10.10] [환경부령 제302호, 2008.10.10, 일부개정]</p>
<p>제 7 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 자등의 교육 등) ① 다중</p>	<p>제 3 조 (업무의 위탁) 환경 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p>	<p>제 5 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 자등의 교육) ① 법 제7조</p>

<p>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 2010. 5.25] [법률 제10312호, 2010. 5.25, 일부개정]</p>	<p>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4. 6] [대통령령 제22888호, 2011. 4. 6, 일부개정]</p>	<p>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8.10.10] [환경부령 제302호, 2008.10.10, 일부개정]</p>
<p>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의하여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개정 2007.12.28, 2011.4.6></p>	<p>제1항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각 6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5.12.30></p> <p>③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④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출장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개정 2005.12.30></p>

③ 산업안전보건법

<p>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0.12.30] [법률 제9847호, 2009.12.29, 타법개정]</p>	<p>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1. 5.19] [대통령령 제22824호, 2011. 4. 4, 일부개정]</p>	<p>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30호, 2011. 7. 6, 타법개정]</p>
<p>제31조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p> <p>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p> <p>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p> <p>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p>	<p>제26조의10 (안전·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 및 요건)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으로서 별표 6의2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훈련 직종(원격훈련은 제외한다)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p>[전문개정 2009.7.30]</p>	<p>제33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 2와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p> <p>③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0.12.30] [법률 제9847호, 2009.12.29, 타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1. 5.19] [대통령령 제22824호, 2011. 4. 4,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30호, 2011. 7. 6, 타법개정]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한다),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8.7]

2)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시행규칙에 열거

「정신보건법」 제6조의2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에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열거

정신보건법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05호, 2011. 8. 4, 타법개정]	정신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1. 4.22] [대통령령 제22906호, 2011. 4.22, 타법개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 2011. 4. 7, 타법개정]
제 6 조의2 (인권교육) ①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제 1 조의4 (인권교육) ①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p>정신보건법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05호, 2011. 8. 4, 타법개정]</p>	<p>정신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1. 4.22] [대통령령 제22906호, 2011. 4.22, 타법개정]</p>	<p>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 2011. 4. 7, 타법개정]</p>
<p>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내용·방법,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8.3.21]</p>		<p>1. 환자의 기본권, 입·퇴원 절차, 처우개선·퇴원 청구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환자의 권익보호 및 이익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의 사례 및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지식·정보와 인권에 대한 인식 형성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1. 국가인권위원회 2. 국·공립 정신병원 3. 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p>

<p>정신보건법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05호, 2011. 8. 4, 타법개정]</p>	<p>정신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1. 4.22] [대통령령 제22906호, 2011. 4.22, 타법개정]</p>	<p>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 2011. 4. 7, 타법개정]</p>
		<p>③ 제1항에 따른 정신보건 시설의 종사자(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인권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정신보건시설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3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정신보건 시설의 설치·운영자 2. 정신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3. 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방법,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교육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3.20]</p>

3) 법에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열거하고, 시행령에서 각 기관의 시설·설비 및 강사 등의 지정기준을 정하는 경우

<p>도로교통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382호, 2010. 7.23, 일부개정]</p>	<p>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1. 6.10] [대통령령 제22910호, 2011. 4.30, 일부개정]</p>	<p>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1. 6.1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 2011. 4.30, 일부개정]</p>
<p>제74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제7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과 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기관이나 시설에서 한다.</p> <p>②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강사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시설을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p> <p>2. 제120조 및 제121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과 그 지부(支部)·지소 및 교육기관</p>	<p>제39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74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설비 및 강사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3></p> <p>1. 시설·설비기준</p> <p>가. 별표 5 제1호 내지 제6호(양호실에 관한 기준을 제외한다)에 따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의 시설·설비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일 것</p> <p>나.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통안전교육 관리용 전산시스템(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한다) 및 강의용 교육기자재를 갖추는 것</p> <p>2. 강사기준</p> <p>법 제76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를 1인 이상 둘 것. 이 경우 전문학원에서는 학과교육강사가 교통안전교육강사를 겸임할 수 있다.</p>	

<p>도로교통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382호, 2010. 7.23, 일부개정]</p>	<p>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1. 6.10] [대통령령 제22910호, 2011. 4.30, 일부개정]</p>	<p>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1. 6.1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 2011. 4.30, 일부개정]</p>
<p>3. 「평생교육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 과정이 개설된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p> <p>4.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p> <p>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을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제79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한 자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p> <p>2. 제79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운영되는 기관 또는 시설</p> <p>[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 2011.12.9]</p>	<p>3. 운영기준</p> <p>1시간의 교육과정을 매주 5회 이상 둘 것. 이 경우 그 교육과정에는 매주 1회 이상의 야간 교육과정 및 매월 1회 이상의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p>	

4)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시행규칙에서는 교육기관을 소속기관으로 하는 경우

<p>식품위생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p>	<p>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1. 4.22] [대통령령 제22906호, 2011. 4.22, 타법개정]</p>	<p>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1. 8.19] [보건복지부령 제73호, 2011. 8.19, 일부개정]</p>
<p>제30조 (검사원의 교육) 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대표자 또는 검사원은 매년 식품위생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p>		<p>제30조 (검사원 등의 교육 기관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대표자 또는 검사원에 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는 교육을 받는 대표자 또는 검사원이 소속된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표자에 대해서는 제3호 및 제4호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1. 식품위생 관련 법규 2.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3. 식품위생검사의 방법 4.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5. 그 밖에 시험·검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식품위생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1. 4.22] [대통령령 제22906호, 2011. 4.22, 타법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1. 8.19] [보건복지부령 제73호, 2011. 8.19, 일부개정]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대표자: 매년 4시간 2. 검사원: 매년 21시간

5)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1. 9.30] [법률 제10466호, 2011. 3.29, 일부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10.10] [대통령령 제23215호, 2011.10.10, 일부개정]
제12조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다른 시·군·자치구와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등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자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29]	제49조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가.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등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42조에서 이동 <2011.10.1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1. 9.30] [법률 제10466호, 2011. 3.29, 일부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10.10] [대통령령 제23215호, 2011.10.10, 일부개정]
	제50조 (교육의 위탁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9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

3. 자조금의 적립지원

(1) 자조금의 의의³⁾

자조금은 광의의 자조금과 협의의 자조금으로 구분된다.

광의의 자조금이란 이익집단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여러 형태의 자조적 재원을 말하며, 여기에는 단체의 회비, 찬조금, 기부금, 잡부금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협의의 자조금이란 법규정 또는 집단의 결의로서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부과·징수하여 특정목적에 사용하는 제도적인 기금이며, 일반적으로 자조금은 협의의 의미를 가진다.

법규정에 의한 자조금을 법정 자조금 또는 의무자조금(Mandatory Check-off Fund)이라 하고, 법규정이 전제되지 않고 집단의 결의에 의해 스스로 납부하는 형태의 자조금을 임의자조금(Voluntary Check-off Fund)이라 한다. 법규정에 의한 경우에도 집단구성원 대다수의 찬성을 전제로 한다.

자조금제도란 특정사업의 수행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그 사업의 효과를 인식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3) 자조금의 의의, 목적, 성격과 관련하여서는 (사)한국자조금연구원 홈페이지의 자조금제도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였다.

(2) 자조금의 목적

1) 자구대책

자조금은 생산자의 자구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농업생산자는 숫자가 많고 경영규모가 작은데 반해, 농기업(자재 공급, 가공, 유통)은 숫자가 적고 기업경영을 하는 경제적 강자이므로 생산자는 이들과의 협상관계에서 항상 불리한 경쟁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1차 산업종사자는 연관 2·3차 산업과의 거래교섭력(bargaining power)을 높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농산물은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하고 생산자의 소득도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항상 제기되고 있다. 생산자는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어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참여하는 일에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 즉, 생산자는 산업의 주인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도산업사회에서 농업이나 어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성과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 두면 사양산업이 되고 만다. 따라서 농업과 어업은 급변하는 주변여건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스스로가 살아남는 대책(survival measures)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생산자의 자구대책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불가피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2) 생산자의 조직화

생산자는 자구를 위한 이익집단의 역할을 하기 위해 우선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생산자의 힘을 한데 모아 조직화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생산자의 조직에는 협동조합이 있다. 특정생산자가 어떤 경제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모인 단체가 협동조합이다. 이 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는 조합원인 동시에 산업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이 잘 조직되어 제 역할을 다하면 조합원 개인의 이익은 물론 그 산업 전체의 발전에도 도움을 준다. 산업을 대표하는 전국 생산자 조직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협회(associations, federations, councils)라고 불리는 조직이다. 이 협회는 그 산업의 공통관심을 총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며, 경제사업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다시 협회의 회원이 되어, 그 산업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의 일원으로도 기여하는 것이다. 자조금은 생산자의 조직화를 촉진하는데 쓰인다. 자조금을 부담하는 생산자는 산업조직의 필요성을 알게 되어 더욱 적극적으로 조직에 참여하게 된다.

3) 공동위험부담

자조금의 또 하나 목적은 산업 내외에 개재하고 있는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데 있다. 그것은 농어업이 갖고 있는 위험과 불확실성(risk and uncertainty) 뿐만 아니라 근대산업사회에서 농업이나 어업이 갖는 산업적 위험까지도 포함한다. 오늘날 농어업은 많은 국내외적 압력을 받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다른 산업 및 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을 강요받고 있다. 생산효율과 국제경영 문제는 가장 심각한 압력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외적 압력에 대한 위험을 공동으로 대처하는 데 자조금은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다. 농어업내부의 경제적 압력도 증가하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문제는 총수요와 총공급을 연결해야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기업에만 의존할 수 없다. 이런 과제는 산업을 총체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조정해야 하는 산업의 공동위험인 것이다. 자조금은 이러한 공동위험을 부담해 가는 방향설정에 사용될 수 있는 재원이다.

4) 산업촉진

근대산업과 국제화사회에서 농어업이 생존, 발전하려면 당면 문제점을 적시에 확인, 조정하여 생산, 유통, 소비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자조금은 이러한 산업의 문제를 확실히 규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기금이다. 유통개발은 각 기능의 능률화와 산업 전체의 합리적 조정이 함께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으로 성취된다. 산업측면에서 유통문제를 다루는 데 자조금은 아주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는 재원이다. 오늘날 산업촉진의 표적은 소비촉진에 모아지고 있다. 농수산물은 대부분이 최종소비상품이기 때문에 소비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창출되어야 비로소 유통과 생산의 필요가 생기는 산업이다. 그런데 원료 농수산물은 대개 생산자 상표가 붙여질 수 없고 가공, 유통 단계에 들어가야만 상표가 가능하므로 상표(brand)촉진 이전의 상품(commodity)촉진도 중요하다. 개별 생산자는 상품촉진을 할 능력이 없는 까닭에 모두가 함께 자조금으로 상품의 일괄, 공동촉진(generic promotion)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산업의 구성원 개개인이나 어느 부문이 개별적으로 담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위해 자조금은 산업촉진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5) 정책형성 참여

전근대적 형태의 농어업정책은 정부주도하의 지원대책이 그 골자를 이루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일단 농어업이 일정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농어업의 발전은 국내외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농어업정책은 생산자정책인 동시에 소비에 대한 소비자정책 및 유통에 관련된 제반 조정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농어업정책은 산업의 현실에 입각하여 생산자이익 측면과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형성(formation), 결정(decision), 집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주도에서 산업주도로 정책방향이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는 정책이 결정, 집행만 될 뿐이고 형성, 평가되는 절차가 무시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정책형성과정이 생략되고 정책 입안자의 편의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책은 산업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책이 결정되기까지는 이해를 달리하는 많은 집단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절차, 즉 민주적 정책형성 과정을 밟아야 한다. 농어업생산자는 정책의 형성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산업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산업실상에 적합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도 자조금은 필요하다.

6) 산업의 장기발전 주도

농어업은 국내외적 여건 변화에 적응하기가 다른 산업에 비해 쉽지 않다. 따라서 농어업은 합리적 발전을 전제로 하는 장기적 기본전략이 필요하다. 하나의 산업이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이익집단을 중심으로 한 단체적 활동에 의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자기산업을 스스로가 육성 발전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생산자 각자가 그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으므로 자조금을 부담하여 어떤 기간적인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자조금은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3) 자조금의 성격

1) 무임편승자의 배제

경제적 열위에 있는 농어업생산자의 경우는 협동조합이나 협회의 조직을 통하여 경제적 지위향상과 단체교섭력의 증진을 도모한다. 그런데 여기서 무임편승자(free riders)의 문제가 발생한다. 협동조합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낮은 참여도와 협회 회비 징수의 곤란성은 곧 이 무임편승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자조금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즉 부과와 징수를 의무화함으로써 무임편승자를 근원적으로 없애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다시 말하면 비용조달에 있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공평한 부담원칙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2) 법정 자진부과

자조금은 생산자가 결의하여 자진부과(self imposed)하는 것이다. 국가의 재정확보를 위하여 국민의 납세를 의무화하듯이 이익집단의 특정활동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집단 구성원의 비용부담을 자진의무화하는 법정부과금(levy) 또는 할당금(assessment)이 바로 자조금인 것이다. 국가단위에서 강제부과하는 것은 조세(taxes 또는 duty)이고 산업단위에서 자진부과하는 것은 자조금이다. 따라서 자조금은 산업사회의 이익집단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진부과하는 목적기금으로 종래 개념의 찬조금, 기부금 또는 잡부금과도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3) 수익자부담

법률상의 수익자 부담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익을 위한 어느 특정사업의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수익자에 지우는 부담을 말한다. 자조금도 산업의 공동사업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때의 수익자는 그 산업의 구성원이며 수익의 크기는 구성원 각자의 사업량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자조금은 수익자 부담이란 시각에서 이익에 대한 대상인 요금(charges, rates, fees, 또는 fares), 서비스에 대한 보상인 수수료(commission, charges, percentages 또는 brokerages), 친목유지와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비(fees, 또는 dues)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조금은 특수목적을 위한 수익자 부담 성격의 자금이므로 특정용도 이외의 사용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부담자인 생산자는 기금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내역은 부담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4) 극소액부담

자조금은 수익비례원칙에 따라 극소한 금액을 수익자가 분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비농업부문의 법정자조금은 상당히 높은 비율을 부과하나, 농업부문의 자조금은 거래액의 0.1%~0.5%와 같이 낮은 비율을 적용시켜 생산비나 수익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자조금의 부과대상은 농어민의 생산물(판매량)이다. 따라서 생산물의 판매시장이 체계화되어 있어야 한다. 부과방법에 있어서는 거래액에 대한 비율 이외에 거래단위당(두당, 수당, kg당 등) 얼마씩 분담시킬 수 있다. 자조금 제도가 개별 생산자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주느냐 하는 문제는 소비자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문제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0.5% 미만의 부과라고 하면 농어업 특유의 자재 및 생산물가격 변화의 추세로 보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주는 부담이란 거의 의식할 수 없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전국의 생산자가 부담하도록 제도화했을 때 산업발전기금의 역할을 할 만큼 큰돈이 모아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5) 거래시점에서의 자동공제

자조금은 조직화된 장소에서 공제 수금하게 된다. 소, 돼지는 도축장, 닭은 도계장, 계란은 집난장, 우유는 집유장이 바로 수금지점이다. 이때 해당 사업장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의무와 같이 법에 의한 수금의무가 주어지고 또 동업의식에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자조금은 일단 제도화되면 자동적으로 공제, 수금된다. 이렇게 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산업구성원은 모두 참여하여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사단법인인 협회가 그 산업의 공통문제를 풀기 위한 비용을 엄출하고자 회비를 부과해 보지만 전국에 산재해 있는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수금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경험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다. 자조금은 이러한 불합리를 저절로 풀어주는 제도이다.

6) 생산자 단체에 의한 관리

특정 이익집단, 즉 산업의 자조금은 그 집단을 대표하는 하나의 단체가 관리하게 된다. 법으로 전담기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게도 하나, 일반적으로 해당 산업의 생산자단체(producers association)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자단체란(산업의 일부생산자가 특정 경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직하는 협동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그 산업을 총괄 대변하는 여러 형태의 단체(예: 협회, 연합회, 협의회 등) 회원과 협동조합 조합원까지를 포함하는 산업구성원 모두의 단체를 지칭한다. 사업장에서 수금된 자조금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이 지정단체로 보내어진다. 이 단체에는 이사회를 두어 자조금에 대한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사용목적과 범위내에서 운용하게 한다. 또 산업기금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운영결과를 공개하고 정부에 보고하도록 한다.

7) 산업과 정부의 합동 프로그램

자조금제도는 품목별 생산농민의 자발적인 자구사업이지만, 정부의 수급, 유통, 소비정책을 보완하고 산업의 안정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산업과 정부의 공동 관심사라 할 수 있다. 특히 생산자의 강제징수가 불가피하여 근거법률(enabling legislation)을 만들어야 하고 자조금의 조성, 관리, 평가, 공개 등 제반절차를 규제하게 된다. 따라서 자조금은 산업의 사적 자금인 수익자 부담금(checkoff funds)과 정부의 공적자금인 지원금(matching funds)에 의한 산업, 정부의 합동 프로그램인 것이다. 산업이 발전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정부의 정책자금에만 의존하다가 산업발전이 고도화함에 따라 산업 스스로의 자진부과금과 더불어 산업발전을 공동으로 촉진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4) 입법례

자조금에 관해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2조에서 농수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어업·식품산업의 관측, 생산·포획·채취·양식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金)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조금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수산물 유통업 및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개별법으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김치산업 진흥법」 제19조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자단체가 김치의 판로 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에 농산물안정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조금에 관한 법률로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5) 「낙시 관리 및 육성법」에의 적용가능성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자조금은 생산자의 생산물에 대한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운영되는 것으로서 「낙시 관리 및 육성법」상의 낙시터업자와 낙시어선업자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곤란하다. 자조금은 생산품에 부과되는 것으로서 낙시터업과 낙시어선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생산품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또한 입법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자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낙시 관리 및 육성법」에는 자조금의 적립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자조금 적립지원에 관한 규정을 넣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남게 된다.

예산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관한 지원조항을 넣는 경우에는 「김치산업 진흥법」 제19조와 같은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김치산업 진흥법】

제19조 (김치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사업자단체가 김치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00조 (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사업자단체가 그 회원과 낚시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과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에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

(6) 입법례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2조 (농수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어업·식품산업의 관측, 생산·포획·채취·양식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金)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수산물 유통업 및 식품산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7 조 (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자조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대상이 되는 농수산물과 보조금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 조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생산자단체(이하 “자조금조성단체”라 한다)는 그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자조금을 조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05.6.23>

1.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2. 당해 농수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 품질향상, 자율적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당해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사업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협약이나 유통조절명령(당해 농수산물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을 이행하기 위한 경비의 지출
5. 당해 농수산물에 관한 유통정보의 제공,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 및 당해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간의 유통정보화추진을 위한 사업
6. 출하조절 등 당해 농수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9 조 (보조금의 지급)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수산물은 생산지역의 집중도가 높거나 생산자조직이 정비되어 있는 등 자조금의 조성이 용이한 농수산물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이 경우 친환경농산물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품목을 하나의 보조금 지급 대상품목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삭제 <2005.6.23>

③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조금조성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것. 이 경우 자조금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성원이 생산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의 생산규모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할 것

④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농업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자조금조성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이 납입한 원

금에 한한다)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하되, 연간 자조금 조성금액은 그 구성원이 생산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의 연간 생산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조금조성단체의 대표성·조직화정도·사업역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차등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생산액의 산정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6.23, 2007.7.2, 2008.2.29>

⑤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조금조성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조금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자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2. 자조금의 사용목적 및 사용계획
3. 자조금의 조성규모 및 조성방법
4. 자조금의 사용액 및 사용내역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사원인 법인에 한한다)이 제8조 및 이 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조금조성단체에 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2.2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 조 (자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6.28>

1. 목적
2. 사업
3. 명칭
4. 사무소의 소재지
5. 구성원의 자격
6. 구성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구성원의 탈퇴·제명시의 납입금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자조금의 조성방법·납입금액 및 수납장소
9. 자조금의 용도 및 사용방법
10. 잉여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자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 12.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
- 13. 기타 자조금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김치산업 진흥법

제19조 (김치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사업자단체가 김치의 관로 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법의 목적과 내용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2006년 12월 28일 개정하고 2007년 6월 29일 시행하였다.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 6 장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정령안

1. 해 설

제 1 조 (목적)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은 수산업법 제65조에 따라 설정된 것
따라서,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은 수산업법 제65조가 개·폐되지 않으면,
폐지될 수 없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에서 동 규칙의 내용을 규정한다고 하여 일부 개정은
가능할 것이나, 규칙 자체의 폐지는 수산업법과의 관련에서 고려되어야 함
- 유어장과 낚시터
 - 유어장의 개념
유어장(遊漁場)은 어촌계 등이 그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
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어촌계 등을 구성하고 있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수산업법 제65조).
따라서 체험학습을 하거나 관광을 위한 어장도 포함되어 있다.
 - 낚시터와 낚시터업의 개념
낚시터란 낚시가 이루어지는 바다·바닷가·내수면 등의 장소를 말하고, 한다. 낚시
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
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3호, 제4호).
 - 따라서 유어장은 사용용도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체험학습이나 관광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낚시만을 용도로 하는 낚시터 보다는 넓은 개념이고, 공간적 범위에서 보자
면 낚시터가 바다·바닷가·내수면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내수면을 포함하지 않
는 유어장 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제 2 조 (낚시대상 수산동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수산동물을 말한다.

1. 연체동물 중 두족류
2. 양서류

【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패류·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해 설】

법 제2조에서는 낚시도구를 이용하여 낚는 수산동물을 어류·패류·갑각류로 예시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위임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 수산동물에 관한 정의는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2조에 있는바, 동조에서는 “수산동물”을 어류·패류·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1. 연체동물 중 두족류, 2. 극피동물 중 성게류, 해삼류, 3. 척색동물 중 미색류, 4. 갯지렁이류·개불류·양서류·자라류·고래류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수산동물 중 낚시의 대상이 되는 수산동물은 두족류와 양서류가 해당될 것이다.

【참조법령】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p>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동물”이란 어류·패류·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p>제 2 조 (수산동물의 범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 2.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해삼류 3. 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4. 갯지렁이류·개불류·양서류·자라류·고래류

제 3 조 (낚시제한기준)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체장(體長)·체중과 시기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2,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별표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의 사용
 6.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은 어업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법】

제 5 조 (낙시제한기준의 설정) 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낙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體長)·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낙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한 기준(이하 “낙시제한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시제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라 정한 낙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낙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낙시제한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낙시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 설】

무분별한 낙시행위로 인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낙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體長)·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낙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한 기준(낙시제한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수산자원관리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제한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동법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동시행규칙에서도 낙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하천·호소의 이용목적이나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와는 목적을 달리하고 있고, 그 제한의 장소가 낙시제한구역이라는 점에서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곤란하다.

또한 법 제3항에서는 시·도의 조례로 법령에서 정하는 낙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낙시제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다.

【참조법령】

■ 낙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體長)·체중 등

○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p>제14조 (포획·채취금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를 금지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6 조 (포획·채취금지)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 및 수심은 별표 1과 같다.</p> <p>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별표 2와 같다.</p> <p>③ (생략)</p> <p>[별표 1]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제6조제1항 관련)</p> <p>[별표 2]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제6조제2항 관련)</p>
○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p>제21조의2 (포획·채취 금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체장·체중 등 포획·채취 금지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 (포획·채취 금지) 법 제21조의2에 따라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 및 체장은 별표 1과 같다.</p> <p>[별표 1]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 및 체장(제17조 관련)</p>
<p>■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p> <p>○ 내수면어업법</p>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p>제18조 (유어질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p>	<p>제14조 (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p>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p>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p> <p>제19조 (유해어법의 금지) 누구든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p>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p> <p>③-④ (생략)</p> <p>제15조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p>제25조 (유해어법의 금지) ① 누구든지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 또는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3조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0조 (낚시행위의 제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제외한다)·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4.6></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낚시의 방법·시기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부담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30조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낚시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나.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줄낚시는 제외한다) 다.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라.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마.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행위를 하거나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바.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배터리·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른 포획금지행위 3.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밖에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제 4 조 (낙시통제구역의 공고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낙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 공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낙시통제구역의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사유
2. 낙시통제구역의 명칭
3. 낙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낙시통제구역의 낙시통제기간(지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5. 낙시통제구역에서 낙시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6.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연월일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태풍, 폭우 등 급박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법】

제 6 조 (낙시통제구역) ①-②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낙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낙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생략)

【해 설】

법에서는 낙시통제구역이 지정, 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해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법에서는 “낙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으로 예시하고 있고, 낙시통제구역의 지정목적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낙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이기 때문에(법 제6조제1항), 이를 감안한 공고사항이 정해져야 한다.

따라서, 시행령에서는 1.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참조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낙시금지구역 또는 낙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낙시금지구역 또는 낙시제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고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금지구역이나 낚시제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명칭 및 위치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낚시의 방법·시기 등 제한사항(낚시제한구역에만 공고한다)
 3. 법 제82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낚시금지 또는 낚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의 부과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장소
 5. 낚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방법
 6. 그 밖에 낚시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 5 조 (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등)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등은 별표1과 같다.

【법】

제 8 조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이하 “유해 낚시도구”라 한다)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나 관람 또는 전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 설】

낚시도구(낚싯대와 낚싯줄·낚싯마늘 등 도구, 법제2조제1호 본문 중 정의)는 수산동물을 낚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되는 경우에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고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낚시도구의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낚시도구에 대해서는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없다고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유해물질 허용기준은 낚시인의 행동의 자유 및 제조·판매·수입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기준의 설정은 비례원칙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능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동법 제12조의2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잔류하거나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하여 1. 생산단계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의 적합 여부, 2. 유통·판매단계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법 제2조제13호의 정의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시행규칙 제21조의2에서는 생산단계의 농산물과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한 유해물질의 안전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80호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별표 1]에서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다만,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은 농산물분류 품목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어서 낚시도구의 유해물질 허용기준에는 적용할 수 없다.

낚시도구는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의 공산품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낚시도구는 안전인증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낚시도구 중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납추이다. 낚시 중 유출되는 납추의 위해성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여기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부족한 현상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함량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과학적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른 제한을 낚시 관계자들이 준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낚시도구의 함유 및 잔류 허용 유해물질의 기준은 추가적인 연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 연구(조영봉, 낚시용 추 및 미끼 등의 환경유해성 조사·분석 연구, 2006년도 해양수산부 용역 과제, 2006)가 있지만,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제 6 조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법 제9조, 제34조제1항에 따라 낚시인에 대한 조치 및 낚시어선에 대한 출항제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기상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강풍·풍랑·해일(폭풍해일, 지진해일)·태풍·안개의 주의보 또는 동 경보가 발령된 경우
2. 안개 등으로 인하여 해상에서의 시계(視界)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3. 그 밖에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이 해상 상황의 급작스런 악화 등으로 인하여 낚시어선의 출항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 9 조 (낚시인 안전의 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낚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 2.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출입금지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낚시인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 지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수면에 관한 사항은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4조 (출항의 제한) ①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기상과 해상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고려하여 낚시어선업자·선원·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항제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 설】

□ 법 제9조와 법 제34조의 내용

○ 법 제9조의 내용

법 제9조는 낚시인의 안전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낚시인에게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출입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

○ 법 제34조의 내용

법 제34조제1항은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이 기상과 해상상황에 따라 낚시어선업자·선원·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임

□ 규정 내용

법 제9조와 제34조가 낚시인 등의 안전을 위해 기상악화 등의 경우에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관해 현재 「낚시어선업법」 제12조의3과 이에 따른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출항의 제한 기준 등)에서 제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여 규정

【참조법령】

○ 낚시어선업법

제12조의3 (출항의 제한) ①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기상 및 해상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고려하여 낚시어선업자·선원 및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항제한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제 7 조의2 (출항의 제한 기준 등) 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기상업무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강풍·풍랑·해일·태풍의 주의보 또는 동 경보가 발령된 경우
2. 안개 등으로 인하여 해상에서의 시계(視界)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3. 그 밖에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이 해상 상황의 급작스런 악화 등으로 인하여 낚시어선의 출항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 7 조 (낚시터업의 허가 등) 법 제10조제1항 후단과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낚시터의 위치·구역 변경
2. 낚시터의 명칭 변경
3. 낚시터업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을 말하며, 법 제21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승계에 의한 영업자의 변경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 8 조 (낚시터업의 허가우선순위)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제19조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漁業契), 그 밖에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법인
2.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허가의 연장을 신청한 자
3. 낚시터업을 5년이상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4. 수생태계의 보전 및 수산자원의 보호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낚시터업의 허가우선순위를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1.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에서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낚시터의 관리 및 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전·보호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해 설】

○ 「내수면어업법상」 우선순위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1항은 각 호에서 면허어업 및 허가어업(낚시업)에 관한 우선순위를 설정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內水面漁業契), 법인과 그 밖의 단체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내수면 어업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 검 토

위 각 우선순위를 허가어업인 낚시터업에 적합하도록 수정

- 1호는 그대로 수용
- 2호는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허가의 연장을 신청한 자, 낚시터업을 5년 이상 경영하였거나 종사한 자로 수정
- 제3호는 수생태계의 보전 및 수산자원의 보호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로 수정

【참조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15조 (내수면어업계) ①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내수면어업인은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조직은 어업을 하려는 내수면이 위치한 행정구역별로 조직하되 그 계원 자격 및 계원 수는 그 내수면에 잇닿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5명 이상으로 한다.

③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해산·조직·운영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어촌계) ①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어촌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지구별수협의 성립) ① 지구별수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2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지구별수협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조합원”으로 본다.

제 9 조 (낙시터의 시설·장비 기준)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시설·장비

- 가. 구명동의(수상좌대, 관리선의 경우에도 각각 수용인원 수의 120%에 해당하는 갯수)
- 나. 구명부환 및 구명줄(수상좌대, 관리선의 경우에도 사용인원에 해당하는 갯수)
- 다. 소화기(수상좌대, 관리선의 경우에도 용량 2.5킬로그램 이상)
- 라. 의료장비·구급의약품

2. 편의시설·장비

- 가. 간이화장실(소각식 또는 수거식)
- 나.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시설
- 다. 낙시터 안내표지판

3. 낙시터 관리 시설·장비

- 가. 낙시터 관리 사무실
- 나. 방송 또는 통신 시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 3. 「지하수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
-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 취급시설

【법】

제11조 (낙시터업의 허가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낙시터업 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다.

- 1. 낙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낙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 2.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것
- 3.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낙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4.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어업 구역의 일정 부분을 이용하는 낙시터업인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양식 어종으로 한정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장비의 기준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장비의 종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 설】

법 제11조는 낚시터업의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고, 특히 제1항제1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것”, 제3호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에 관한 시설·장비의 기준과 종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먼저, 제1호는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과 장비의 구분을 1. 안전시설과 장비, 2. 편의시설과 장비, 3. 낚시터 관리 시설과 장비로 구분하고, 각 구분에 해당하는 시설과 장비를 규정한다.

1. 안전시설과 장비에는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관리선에 비치해야 하는 장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구명동의, 구명부환 및 구명줄, 소화기, 의료장비·구급의약품으로 정하고, 2. 편의시설과 장비에는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로서 간이화장실, 폐기물 처리 또는 저장시설, 동 규칙 제2항에 따른 낚시터 안내표지판으로 정하고, 3. 낚시터 관리 시설과 장비에는 낚시터 관리 사무실, 동 규칙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방송 또는 통신시설로 정한다.

제3호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 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지하수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하수오염 유발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 취급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는 시설로 정한다.

【관련법령】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 5 조 (유어장관리선) ① 유어장에 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1.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면허어업의 어장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얻은 어선
2. 법 제41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사업의 유선으로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선박

② 관리선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가 「선박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용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7.3.30, 2011.2.24>

1. 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동의. 이 경우 비치할 구명동의중 20퍼센트 이상을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2. 승선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3. 직경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4.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 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5. 용량 2.5킬로그램 이상인 소화기
 6. 비상용 구급약품
 7. 그 밖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장비
- ③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선박을 관리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검사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시행규칙의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관리선의 최대 승선인원은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11.2.24>
- ⑤ 삭제 <2007.3.30>
- ⑥ 삭제 <2007.3.30>

제 9 조 (유어장의 시설 및 자원 조성) ① 유어장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간이화장실, 폐기물의 처리 또는 저장시설, 그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유어장에는 유어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되, 그 입간판은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 규모로 제작하여 흰색으로 칠하고, 그 위에 청색글씨로 유어질서유지와 수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유어장의 경계선에는 다음기준에 따라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경계선 표지는 각 모서리와 각 변에 설치하되, 변에는 500m 마다 1개씩 설치할 것
2. 표지는 밑변 50센티미터, 높이 30센티미터 크기의 직삼각형의 붉은색 깃발로 할 것
3. 경계선의 수면부분에는 부자(浮子)로 설치하고, 갯벌인 부분에는 말목으로 설치할 것

④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에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매월 2회 이상 유어장 및 그 주변 수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 7 조 (어업허가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선에 대하여,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구에 대하여, 낚시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각각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를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 8 조 (낚시터의 시설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선(수상 낚시대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2. 간이화장실
3.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시설
4. 낚시터 입간판(立看板)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구급차등의 장비) ① 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 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급차등이 속한 기관·의료기관 및 정보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등의 관리와 구급차등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자동차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와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구급차(이하 “일반구급차”라 한다)로 구분한다.

- ②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 ③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통신장비 및 구급차등에 관한 관리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6

1. 특수구급차와 일반구급차로 구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을 구별
2. 일반구급차의 경우

의료장비로 가.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 나.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장비, 다. 기도확보 장치가 있고, 구급의약품으로는 가. 수액제제(인공혈액제제 등)로서 반드시 비닐팩에 포장된 것, 나. 아트로핀이 있다.

제10조 (관리선) ① 낚시터에 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면허어업의 어장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얻은 어선
2.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사업의 유선으로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선박

② 관리선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가 「선박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용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어선법」 제22조에 따른 어선용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1. 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동의. 이 경우 비치할 구명동의 중 20퍼센트 이상을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2. 승선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3. 직경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4.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 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5. 용량 2.5킬로그램 이상인 소화기
6. 비상용 구급약품
7. 그 밖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장비

③ 어선법 또는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선박을 관리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검사에 관하여는 어선법의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관리선의 최대 승선인원은 어선검사증서 또는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법】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 5 조 (유어장 관리선) ① ~ ③ (생략)

④ 관리선의 최대 승선인원은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으로 한다.

○ 선박안전법

제 8 조 (정기검사) ① (생략)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를 각각 지정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 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생략)

○ 어선법

제21조 (어선의 검사)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길이 24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기검사
2. ~ 5. (생략)
- ② (생략)

제27조 (검사증서의 발급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증서를 발급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어선의 종류·명칭·최대승선인원·제한기압 및 만재흡수선의 위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7. (생략)
- ② (생략)

【해 설】

「선박안전법」(‘10.4.15)과 「어선법」(‘09.5.27) 개정에 따라 유어장 관리선은 어선 및 선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령에서 “선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선 또는 선박”으로 하고, “선박검사증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선검사증서 또는 선박검사증서”로 개정한다.

제11조 (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2조제1항 단서와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자원의 산란·성육(成育) 등 번식의 보호
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4.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 (수면이용의 협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낚시터업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와 그 면적
2. 낚시터업의 시설·장비 설치·구비 상황
3. 낚시터업을 하려는 기간

4. 수면사용료

【법】

제13조 (수면 등 이용의 협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4호의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참조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12조 (수면 이용의 협의)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면허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수면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면 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수면의 시설유지 및 보존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0조 (수면이용의 협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활동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와 그 면적
2. 어업의 종류
3. 어업의 시기
4. 어업의 시설물
5. 어업을 하려는 기간
6. 수면사용료

제13조 (원상회복 의무 면제)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2.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5조 (원상회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낚시터에 설치한 시설·장비나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는 등 낚시터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1. 낚시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낚시터업을 경영한 자

2. 낚시터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
3. 허가받은 낚시터업을 폐업한 자
4.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한 자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낚시터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원상회복 의무자”라 한다)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또는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참조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원상회복 의무 면제)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당 공유수면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2.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3.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4조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요건) 법 제5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낚시터의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신청 전에 원상회복계획서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상회복계획서와 원상회복의 소요비용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원상회복의 소요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행보증금으로 법 제10조제1항의 허가신청시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현금의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증권 등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를 대신하여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그 원상회복의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직접사용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이행보증금(현금을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청구서 및 관계 서류를 공유수면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⑨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참조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사용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용·사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또는 신고 전에 원상회복계획서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상회복계획서와 원상회복의 소요비용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원상회복의 소요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행보증금으로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시 또는 신고 시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법 제1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시 또는 변경신고 시에 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행보증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제출할 서류와 추가되는 이행보증금의 산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현금의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증권 등
-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를 대신하여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그 원상회복의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직접사용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
-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이행보증금(현금을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청구서 및 관계 서류를 공유수면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⑨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방류금지어종)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방류가 금지되는 어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중 어류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
4.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산동물전염병의 감염여부를 검사한 결과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방류수산동물을 말한다.

【법】

제20조 (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낚시터업자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수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어종(이하 “방류 금지 어종”이라 한다)을 낚시터업자가 경영하는 낚시터에 방류하지 말 것
2. 수질의 한계기준을 초과하여 낚시터 수질을 오염시키지 말 것
3. 수생태계 보존의 한계기준을 초과하여 낚시터 수생태계를 훼손시키지 말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방류 금지 어종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의 한계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 설】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어종(이하 “방류 금지 어종”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생태계의 교란을 야기하는 어종에 관해서는 내수면에 있어서는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2조제4호에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에 관한 정의가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위임되어 있다. 환경부령인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별표 2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에서 포유류, 양서류·파충류, 어류, 식물로 구분되어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이 정해져있다. 이 중에서 법에서는 “어종”을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포유류, 양서류·파충류, 식물을 제외하고 어류만을 방류금지어종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어장에 있어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 정의되어 있고, 동법 동조 제13호에 “유해해양생물”이 정의되어 있다.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의 정의와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규정이 없으며, 현재 지정을 위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다만, 동 규칙 제5조에서는 유해해양생물에 관해서는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다. 유해해양생물은 그 정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이기 때문에 해양생태계 교란 종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현재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방류금지어종으로는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 지정되면 유해해양생물에 관한 내용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수산동물의 전염병으로 인한 집단 폐사 등이 발생할 경우 수생태계의 균형이 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의 감염검사결과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방류수산동물에 대해서도 방류금지어종으로 할 필요가 있다.

【참조법령】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로서 제5조의2에 따른 위해성 평가결과 생태계에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

나.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중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

5.-7. (생략)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3 조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09.6.1>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제3조 관련)

구 분	종 명
포유류	1. 뉴트리아 <i>Myocastor coypus</i>
양서류· 파충류	1. 황소개구리 <i>Rana catesbeiana</i> 2. 붉은귀거북속 전종 <i>Trachemys spp.</i>
어 류	1. 파랑볼우럭(블루길) <i>Lepomis macrochirus</i> 2. 큰입배스 <i>Micropterus salmoides</i>
식 물	1. 돼지풀 <i>Ambrosia artemisiaefolia var. elatior</i> 2. 단풍잎돼지풀 <i>Ambrosia trifida</i> 3. 서양등골나물 <i>Eupatorium rugosum</i> 4. 털물참새피 <i>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i> 5. 물참새피 <i>Paspalum distichum var. distichum</i> 6. 도깨비가지 <i>Solanum carolinense</i> 7. 애기수영 <i>Rumex acetosella</i> 8. 가시박 <i>Sicyos angulatus</i> 9. 서양금혼초 <i>Hypochoeris radicata</i> 10. 미국쑥부쟁이 <i>Aster pilosus</i> 11. 양미역취 <i>Solidago altissima</i>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1. (생략)

12.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국토 해양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

나.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

13. “유해해양생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로서 국토 해양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14.-15. (생략)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5 조 (유해해양생물) 법 제2조제1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종”이란 별표 4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을 말한다.

[별표 4] 유해해양생물(제5조 관련)

1. 노무라입깃해파리, 작은부레관해파리
2. 보름달물해파리, 코클로디니움, 차토넬라
3. 세방가시이끼벌레, 관막이끼벌레, 자주빛이끼벌레
4. 아르르불가사리, 별불가사리
5. 알랙산드룸, 디니파이스스, 슈도니프시아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20조 (방류수산동물의 검사 등) ① 수산자원의 회복 등을 위하여 종묘(種苗) 또는 치어(稚魚)로서 방류되는 수산동물(이하 “방류수산동물”이라 한다)을 방류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방류수산동물에 대한 수산동물전염병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류수산동물이 수산동물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류수산동물을 방류하려는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격리 또는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감염 여부의 검사대상이 되는 방류수산동물의 종류와 검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의 한계기준 등)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의 한계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하천·호소의 생활기준 중 “약간나쁨”으로 한다.

【법】

제20조 (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낚시터업자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수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어종(이하 “방류 금지 어종”이라 한다)을 낚시터업자가 경영하는 낚시터에 방류하지 말 것
2. 수질의 한계기준을 초과하여 낚시터 수질을 오염시키지 말 것
3. 수생태계 보존의 한계기준을 초과하여 낚시터 수생태계를 훼손시키지 말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방류 금지 어종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의 한계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 설】

법 제20조제1항은 낚시터업자와 그 종사자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의 한계기준을 초과하여 낚시터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오염 내지 훼손시켜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의 한계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해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제10조의2에서는 수계영향권별 및 조사·측정 대상이 되는 호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을 환경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고시 제2006-227호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과 달성기간」에서는 하천과 호소에서의 각 건강보호항목 목표기준과 생활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내수면 낚시터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저수지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하여 목적외 사용되고 있는 바,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267호]에서는 그 제5조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은 제4조에 의한 수질조사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약간나쁨” 등급을 초과하는 농업용 호소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하여 시설관리자와 당해 시설의 유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중점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는 시설관리자는 농업용 호소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약간나쁨”등급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해 추가적인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목적외 사용 승인 기간의 갱신 또는 신규 목적 외 사용 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고,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환경기준을 별표1에서 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개정 2011.3.29> 환경기준에서는 1. 대기, 2. 소음, 3. 수질 및 수생태계(가. 하천, 나. 호소, 다. 해역)에서의 건강환경기준과 생활환경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 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목표기준의 기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존의 한계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시행령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하천·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약간나쁨” 등급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참조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등의 이용목적, 수질 및 수생태계 현황, 오염원의 현황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제22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및 제28조에 따른 조사·측정 대상이 되는 호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이하 “목표기준”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2. 하천·호소등의 수질오염으로 사람이나 생태계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해성에 대한 평가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기준의 결정·고시, 목표기준 달성여부의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의 결정·평가·공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을 결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수질오염도 상시측정 결과와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목표기준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목표기준 등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보에 신고, 법 제5조에 따른 전산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방법과 평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제 5 조 (중점관리 농업용 호소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의한 수질조사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약간나쁨” 등급을 초과하는 농업용 호소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하여 시설관리자와 당해 시설의 유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중점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1. 수질오염이 심각하여 조속한 수질개선대책이 필요한 호소
2. 도시 개발 및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급격한 오염 부하가 예상되어 수질유지가 필요한 호소
3. 기타 일정한 수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호소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중점관리 농업용 호소를 지정하거나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의한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시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약간나쁨” 등급 이상 수질을 2년 연속 유지하는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지속적인 수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중점관리 시설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④ 시설관리자와 시장·군수는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농업용 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오염 방지대책 추진결과를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년도 1월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수질오염 감시 등) ① 시설관리자와 시장·군수는 매년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농업용 호소 및 상류유역에 대해 수질오염 감시계획을 수립하고, 수질오염 방지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농업용 호소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설관리자는 농업용 호소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약간나쁨”등급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해 추가적인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목적외 사용 승인 기간의 갱신 또는 신규 목적 외 사용 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8 조 (수질개선대책수립 등) ① 농업용 호소의 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약간나쁨” 등급 이내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중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 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농업용 호소의 수질관리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소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을 수립 시 중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용 호소의 수질관리 방안도 소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 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시행 지침」에 의한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에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역 관계자를 포함할 수 있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의한 수질조사 결과, 5개년간 지속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약간나쁨” 등급을 초과하는 농업용 호소는 제2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환경기준의 설정) ①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31>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 2 조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 (낙시어선의 규모 및 선령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낙시어선의 대상·규모·선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미만의 동력어선. 다만, 「수산업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중 선외기설치어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0.5톤이상 10톤미만의 범위안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1호의 어선으로서 선령이 20년이하인 목선 또는 선령이 25년이하인 강선·합성수지선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선외기설치어선의 규모를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선정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동의
2. 승선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3. 직경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인 구명줄 1개 이상
4.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5. 용량 2.5킬로그램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6. 비상용 구급약품 1식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낙시어선 승객의 안전 및 낙시어선업 영업구역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지정·고시하는 장비

④ 제3항 각 호의 설비 등은 「어선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법】
 제25조 (낙시어선업의 신고) ① 낙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낙시어선의 대상·규모·선령 및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신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신고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인에게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절차와 신고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참조법령】

○ 낚시어선업법

제 4 조 (낚시어선업의 신고 등) ① 낚시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낚시어선 기타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낚시어선업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의 규모·선령(船齡)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제 2 조 (낚시어선의 규모 및 선령등) ① 「낚시어선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의 규모 및 선령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미만의 동력어선. 다만, 「수산업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중 선외기설치어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0.5톤이상 10톤미만의 범위안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1호의 어선으로서 선령이 20년이하인 목선 또는 선령이 25년이하인 강선·합성수지선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외기설치어선의 규모를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낚시어선업의 신고사항)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번호
2. 어선의 명칭
3. 총톤수
4.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최대승선 낚시어선 승객수
5. 선적항의 명칭

6. 계선장소

7. 낚시어선의 선원 중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면허 소지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그 면허의 직종 및 등급

8. 영업구역

【법】

제25조 (낚시어선업의 신고) ①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규모·선령 및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신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신고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인에게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절차와 신고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참조법령】

○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제 2 조 (낚시어선업의 신고등) ① 「낚시어선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번호
2. 어선의 명칭
3. 총톤수
4.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최대승선 낚시어선 승객수
5. 선적항의 명칭
6. 삭제 <1999.3.23>
7. 삭제 <1999.3.23>
8. 삭제 <2002.11.14>
9. 계선장소
10. 낚시어선의 선원 중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면허 소지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그 면허의 직종 및 등급
11. 영업구역

②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낚시어선업신고서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당해신고사항이 법·「낚시어선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낚시어선업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7>
- ④ 낚시어선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낚시어선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낚시어선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의 규모 및 선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낚시어선업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7>

제19조 (공동영업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의 관할 수역과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법 제27조 단서에 따른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사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정된 구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지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사의 관할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낚시어선이 승객을 낚시장소에 안내하는 영업을 함에 있어서 승객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중 1개의 지점이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하여 있는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안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안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27조 (영업구역)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연접한 시·도 간 구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한다.

【참조법령】**■ 낚시어선업법**

○ 낚시어선업법

제 7 조 (영업구역)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당해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하여 있는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연접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간의 구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낚시어선업법시행령

제 3 조 (공동영업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의 관할 구역과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을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사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정된 구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구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7, 2007.10.31, 2008.2.29, 2010.4.20>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지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사의 관할구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낚시어선이 승객을 낚시장소에 안내하는 영업을 함에 있어서 승객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중 1개의 지점이 당해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하여 있는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안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안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7, 2008.2.29>

[본조신설 2002.11.14]

제20조 (미끼기준) 법 제40조에 따른 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 함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생략)

9. “미끼”란 수산동물을 낚기 위하여 사용하는 떡밥 등을 말한다.

10. (생략)

제40조 (미끼기준의 설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이하 “미끼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미끼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 설】

법 제40조부터 제42조는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과다하게 함유된 미끼는 환경오염이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을 설정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 중에 있는 미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미끼는 회수나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끼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다.

“미끼”란 수산동물을 낚기 위하여 사용하는 떡밥 등으로서(법 제2조제9호), 미끼는 성분의 특성에 따라 동물성 미끼, 식물성 미끼, 가짜 미끼(루어)로 분류될 수 있다.

동물성 미끼에는 생동물성(지렁이, 구더기, 새우, 참붕어 등)과 동물성떡밥(어분, 번데기 가루, 새우가루 등), 식물성 미끼로는 곡물떡밥(글루텐, 곡물혼합, 뽕튀기한 곡물 등), 동물성과 식물성을 혼합한 떡밥(새우+글루텐, 번데기+글루텐 등)이 있다.

식물성 미끼의 경우 곡물이 사용되는 바, 농산물의 경우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생산단계 농산물에 적용할 농약 등 유해물질 잔류기준에 관해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80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이 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농약잔류기준과 중금속 잔류기준을 「식품위생법」 제7조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만, 미끼는 식품(모든 음식물,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곤란하다.

또한, 사료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 인체 또는 동물 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사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3항에서 유해물질·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142호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제3조에서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을 [별표 1] 「사료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에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의 함량기준(미끼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경우에는 식물성 미끼기준은 사료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동물성 미끼기준은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을 설정하기에는 관련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폐수 슬러지를 먹이로 사육하는 지렁이를 미끼로 헤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지만, 실제 낚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지렁이를 대체할 만한 것이 현재 없다는 점에서 규제의 실행가능성이 부족하다. 동물성 미끼기준에 관한 연구 후, 규제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유예하고 홍보 등을 통해 규제순응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짜 미끼(루어)의 경우에는 낚시도구의 하나로서 낚시도구 유해물질 허용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21조 (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과 기준)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이 되는 낚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이하 “낚시 관련 단체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3.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②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어야 한다.」

1. 낚시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2. 낚시의 저변확대를 위한 낚시문화 홍보
3. 낚시터 환경개선 및 예방에 관한 사업
4. 낚시 공간의 조성 및 제공
5. 국내 낚시 관련 용품의 수출 및 국산화 지원
6.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③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낚시 관련 단체 등이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2. 낚시 관련 단체 등의 회원 및 낚시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에 필요한 교재비, 기자재 구입비 또는 시설의 건축비
3. 제1호와 제2호의 지원기준 외의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입법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p>제11조 (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 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7 조 (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지원대상 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p> <p>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p> <p>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p> <p>다. 생산자단체</p> <p>2.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p> <p>가. 법 제4조에 규정된 각 책무를 관련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p> <p>나. 단체의 회원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에 필요한 시설의 건축비 또는 기자재 구입비</p> <p>3. 제1호와 제2호의 지원기준 외의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p>

제22조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① 제48조에 따라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낚시터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낚시터업자 : 이용객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

2. 낚시어선업자 :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
3. 관리선을 관리·운영하는 자 : 어선검사증 또는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
4. 가두리등 낚시터를 관리·운영하는 자 :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4평방미터 당 1명)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선원의 경우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어선원등의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대상에 있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족어선원에 대하여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2조에 따른 폐기 등의 조치권한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낚시 관련 단체, 비영리법인, 전문연구·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1.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우수낚시터의 지정 : 우수낚시터의 지정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낚시 관련 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
2. 법 제46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낚시 관련 단체, 비영리법인

제24조 (과태료 부과·징수의 절차) ① 법 제5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에 적어 과태료를 낼 것을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 6 장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정령안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정령안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1. . . (제 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법제처 심사전

1. 제안이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법률 제10458호, 2011.3.9제정, 2012.9.10 시행)됨에 따라 유해 낚시도구의 기준, 낚시터업자의 준수사항, 낚시어선업의 신고사항,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 등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낚시제한 기준 마련(안 제3조)

- 1)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체장과 시기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과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함
- 2)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은 낚시제한구역에서의 낚시방법으로 한정하여 기준 제시

나.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 등의 경우 공고사항 마련(안 제4조)

- 1) 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 2)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 3)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4) 낚시통제구역의 낚시통제기간(지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 5) 지정 또는 지정해제 연월일

다. 낚시터업의 허가 우선순위(안 제8조)

- 1)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어업계(漁業契), 법인과 그 밖의 단체
- 2)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허가의 연장을 신청한 자
- 3) 낚시터업을 5년이상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 4) 수생태계의 보전 및 수산자원의 보호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 5) 시군구의 조례로 허가 우선순위를 설정
- 6)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는 기준 설정

라. 낚시터의 시설·장비 기준(안 제9조)

- 1) 낚시터업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낚시터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기준을 설정

- 2) 시설에는 관리사, 간이화장실, 좌대별 간이화장실, 낚시터 안내표지판, 방송 또는 통신시설, 쓰레기 수거함 설정
 - 3) 장비에는 관리선, 구멍조끼, 구멍환 및 구멍밧줄, 소화기를 설정
 - 4) 유흥·도박 시설 및 장비는 설치 제한
- 마.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중 관련 부분을 대부분 수용 (안 제16조-제21조)

대통령령 제 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정령안

제 1 조 (목적)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낚시대상 수산동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동물을 말한다.

1. 연체동물 중 두족류
2. 양서류

제 3 조 (낚시제한기준)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체장(體長)·체중과 시기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2,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의 사용
6.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 4 조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 공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사유
2.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3.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낚시통제구역의 낚시통제기간(지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5.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6.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연월일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태풍, 폭우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 5 조 (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등)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등은 별표1과 같다.

제 6 조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법 제9조, 제34조제1항에 따라 낚시인에 대한 조치 및 낚시어선에 대한 출항제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기상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강풍·풍랑·해일(폭풍해일, 지진해일)·태풍·안개의 주의보 또는 동 경보가 발령된 경우
2. 안개 등으로 인하여 해상에서의 시계(視界)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3. 그 밖에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이 해상 상황의 급작스런 악화 등으로 인하여 낚시어선의 출항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 7 조 (낚시터업의 허가 등) 법 제10조제1항 후단과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낚시터의 위치·구역 변경
2. 낚시터의 명칭 변경
3. 낚시터업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을 말하며, 법 제21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승계에 의한 영업자의 변경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 8 조 (낚시터업의 허가우선순위)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제19조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내수면

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漁業契), 그 밖에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법인

2.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허가의 연장을 신청한 자

3. 낚시터업을 5년이상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4. 수생태계의 보전 및 수산자원의 보호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낚시터업의 허가우선순위를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1.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에서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낚시터의 관리 및 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전·보호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제 9 조 (낚시터의 시설·장비 기준)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시설·장비

가. 구명동의

나. 구명부환 및 구명줄

다. 소화기(용량 2.5킬로그램 이상)

라. 의료장비·구급의약품

2. 편의시설·장비

가. 간이화장실(소각식 또는 수거식)

나.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다. 낚시터 안내표지판

3. 낚시터 관리 시설·장비

가. 낚시터 관리 사무실

나. 방송 또는 통신 시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지하수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 취급시설

제10조 (관리선) ① 낚시터에 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면허어업의 어장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얻은 어선
2.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사업의 유선으로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선박

② 관리선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가 「선박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용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어선법」 제22조에 따른 어선용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1. 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동의. 이 경우 비치할 구명동의중 20퍼센트 이상을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2. 승선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3. 직경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4.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 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5. 용량 2.5킬로그램 이상인 소화기
6. 비상용 구급약품
7. 그 밖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장비

③ 어선법 또는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선박을 관리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검사에 관하여는 어선법의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관리선의 최대 승선인원은 어선검사증서 또는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제11조 (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2조제1항 단서와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자원의 산란·성육(成育) 등 번식의 보호
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4.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 (수면이용의 협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낚시터업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와 그 면적
2. 낚시터업의 시설·장비 설치·구비 상황
3. 낚시터업을 하려는 기간
4. 수면사용료

제13조 (원상회복 의무 면제)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2.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낚시터의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신청 전에 원상회복계획서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상회복계획서와 원상회복의 소요비용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원상회복의 소요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낚시

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행보증금으로 법 제10조제1항의 허가신청시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현금의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증권 등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를 대신하여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그 원상회복의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직접사용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이행보증금(현금을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청구서 및 관계 서류를 공유수면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방류금지어종)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방류가 금지되는 어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중 어류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 생물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
4.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산동물전염병의 감염여부를 검사한 결과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방류수산동물을 말한다.

제1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의 한계기준 등)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의 한계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하천·호소의 생활기준 중 “약간나쁨”으로 한다.

제17조 (낚시어선의 규모 및 선령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의 대상·규모·선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미만의 동력어선. 다만, 「수산업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중 선외기설치어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0.5톤이상 10톤미만의 범위안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1호의 어선으로서 선령이 20년이하인 목선 또는 선령이 25년이하인 강선·합성수지선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선외기설치어선의 규모를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선정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동의
2. 승선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3. 직경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인 구명줄 1개 이상
4.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5. 용량 2.5킬로그램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6. 비상용 구급약품 1식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어선 승객의 안전 및 낚시어선업 영업구역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지정·고시하는 장비

④ 제3항 각 호의 설비 등은 「어선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제18조 (낚시어선업의 신고사항)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번호
2. 어선의 명칭

3. 총톤수
4.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최대승선 낚시어선 승객수
5. 선적항의 명칭
6. 계선장소
7. 낚시어선의 선원 중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면허 소지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그 면허의 직종 및 등급
8. 영업구역

제19조 (공동영업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의 관할 수역과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법 제27조 단서에 따른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사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정된 구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의 관할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낚시어선이 승객을 낚시장소에 안내하는 영업을 함에 있어서 승객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중 1개의 지점이 당해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하여 있는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안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안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미끼기준) 법 제40조에 따른 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 함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1조 (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과 기준) ①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이 되는 낚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이하 “낚시 관련 단체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3.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②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낚시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2. 낚시의 저변확대를 위한 낚시문화 홍보
3. 낚시터 환경개선 및 예방에 관한 사업
4. 낚시 공간의 조성 및 제공
5. 국내 낚시 관련 용품의 수출 및 국산화 지원
6.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5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낚시 관련 단체 등이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2. 낚시 관련 단체 등의 회원 및 낚시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에 필요한 교재비, 기자재 구입비 또는 시설의 건축비
3. 제1호와 제2호의 지원기준 외의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2조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① 제48조에 따라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낚시터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낚시터업자 : 이용객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
2. 낚시어선업자 :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

3. 관리선을 관리·운영하는 자 : 어선검사증서 또는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

4. 가두리등 낚시터를 관리·운영하는 자 :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4평방미터 당 1명)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선원의 경우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어선원등의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대상에 있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족어선원에 대하여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2조에 따른 폐기 등의 조치권한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낚시 관련 단체, 비영리법인, 전문연구·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1.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우수낚시터의 지정 : 우수낚시터의 지정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낚시 관련 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
2. 법 제46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낚시 관련 단체, 비영리법인

제24조 (과태료 부과·징수의 절차)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부과한다.

제 6 장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정령안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⑤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별표 / 서식>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별표 2] <신설 2012.9.10>

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등 (제5조 관련)

- 낚시용 추의 소재는 독성이 없어야 한다.
- 낚시용 추의 표면에 유약 등의 광택제나 페인트, 합성수지 등으로 코팅 처리하거나 감싸지 않아야 한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별표 3] <신설 2012.9.10>

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 함량기준 (제19조 관련)

가. 분해 미끼

- (1) 분해 미끼의 특정물질 함량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유해원소	납(Pb)	수은(Hg)	카드뮴(Cd)
기준[mg/kg]	3이하	0.5이하	0.2이하

- (2) 분해 미끼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공정서에서 정한 사료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인조 미끼

1. 국제규제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
2. 국제협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취급 제한·금지 물질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	법 제55조 제1항제1호	100	200	300
2. 법 제7조제1호를 위반하여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린 자	법 제55조 제1항제2호	100	200	300
3. 법 제7조제2호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은 자	법 제55조 제1항제3호	100	200	300
4. 법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자	법 제55조 제1항제4호	100	200	300
5. 법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낚시터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법 제55조 제1항제5호	100	200	300
6.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낚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55조 제1항제6호	100	200	300
7. 법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한 자	법 제55조 제1항제7호	100	200	300
8.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사	법 제55조 제1항제8호	100	200	3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조종·승선 제한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9.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55조 제1항제9호	100	200	300
10.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고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5조 제1항제10호	100	200	300
11.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자	법 제55조 제1항제11호	100	200	300
12. 법 제42조에 따른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에 대한 회수·폐기 또는 안전상의 위해제거 조치 명령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법 제55조 제1항제12호	100	200	300
1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법 제55조 제1항제13호	100	200	300
14.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법 제55조 제1항제14호	100	200	3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5.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55조 제1항제15호	100	200	300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거부·기피한 자	법 제55조 제2항제1호	30	60	90
2. 법 제24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휴업·폐업·재개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5조 제2항제1호	30	60	90
3.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한 자	법 제55조 제2항제3호	30	60	90
4.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을 낚시어선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55조 제2항제4호	30	60	90
5. 법 제33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입항한 자	법 제55조 제2항제5호	30	60	90
6.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에 대한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법 제55조 제2항제6호	30	60	90
7. 법 제39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폐업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5조 제2항제7호	30	60	90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연 락 처	(02) 500 -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등)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내용 및 설치 장소는 별표 1과 같다.

제 3 조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의 적용예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 낚시도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학술연구나 관람 또는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조·공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그 부설연구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제 4 조 (낚시터업허가 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신청서를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도를 첨부해야 한다.

제 5 조 (허가 등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① 법 제12조제2항,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 및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낚시터업허가(등록)기간 연장신청서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낚시터업허가증(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및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은 낚시터업 허가 및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 6 조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영 제12조제7항에 따라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에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낚시터업의 등록)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 8 조 (낚시터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낚시터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산동물전염병의 감염여부를 검사한 결과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어종의 방류행위
2. 폭발물·배터리·어망 등을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 행위
3. 산란지를 훼손하는 행위

제 9 조 (지위승계신고)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과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등록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또는 양도인 및 양수인이 허가 또는 등록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2.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신고를 하는 자가 법 제10조제1항,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제10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서) 법 제24조에 따라 낚시터업을 휴업·폐업 등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낚시터의 휴업·폐업 등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낚시어선업 신고의 방법·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서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신고사항이 법 및 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낚시어선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 제17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규모 및 선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방법)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확인증을 발급 받은 자는 낚시어선에서 승객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에 따라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 (보고사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의 발급·재발급 현황
2. 안전점검의 실시현황
3. 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운영에 관한 현황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보고시기·보고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 (공동영업구역 지정요청 등) 시·도지사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동영업구역 지정요청사유서
2.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구역(이하 “지정예정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간의 협의결과에 관한 서류
3. 지정예정구역의 위치와 구역에 관한 도면
4. 지정예정구역의 낚시어선업 실태조사서

제15조 (출입항신고서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자가 출입항신고기관(「선박안전 조업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출항·입항 신고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할 출입항신고서와 승선자 명부는 각각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2호 서식과 같다.

② 낚시어선업자가 제1항에 따라 출입항신고를 한 경우에는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 출입항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관리선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낚시터 이용자를 관리선에 승선시켜 낚시터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내수면에 설치된 낚시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가두리낚시터를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지13호 서식의 가두리낚시터 이용객 명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14조제3항, 법 제19조제3항, 제38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행정처분통지서에 의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처분의 통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량은 당초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폐업신고) 법 제39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0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낚시어선업자가 당해 낚시어선을 매도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또는 임대계약일
2. 당해 낚시어선이 침몰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침몰된 날
3. 당해 낚시어선이 6월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된 날

제18조 (폐기 등의 방법과 절차)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미끼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해당 미끼의 안전상의 위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회수·폐기명령”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회수·폐기 대상 미끼
2. 회수·폐기량
3. 이행기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기간은 1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회수·폐기량 등을 고려하여 회수·폐기명령을 하는 자가 정한다.

③ 회수·폐기명령을 받은 미끼의 제조업자 등은 회수·폐기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폐기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방법
2. 회수된 제품의 폐기 등 처리방법
3. 그 밖에 회수·폐기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④ 제조업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이하 “이행기간”이라 한다) 내에 회수·폐기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폐기 실적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⑤ 제조업자 등은 이행기간 안에 회수·폐기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이행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때에는 1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⑦ 관계 공무원이 법 제42조에 따라 미끼를 압류한 경우에는 별지 00호 서식의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00호 서식에 따른다.

제19조 (우수낚시터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우수낚시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산자원이 풍부한 낚시터
2. 낚시터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
3. 낚시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안전시설

②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우수낚시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우수낚시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우수낚시터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우수낚시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우수낚시터의 지정·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① 법 제46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낚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낚시터의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3. 낚시터의 안전관리 및 수산자원의 보호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낚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한 감시·지도 및 계몽
2. 수산자원의 보호 관련 여론의 수렴 및 건의
3. 그 밖에 낚시터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는 임무

③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1조 (전문교육의 실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교육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한 기관이 실시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낚시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2. 낚시터 시설물 안전에 관한 사항
 3.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4. 낚시터 수질관리 및 환경기준
 5. 낚시관련 정책 및 법규
 6. 그 밖에 낚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교재의 편찬, 강사수당 등 전문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교육비·교육시간·교육교재편찬·교육실시결과보고 등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2조 (수수료) ① 법 제49조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 ② 법 제4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해당 수수료 징수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제23조 (출입·검사 등) ① 법 제50조에 따른 출입·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1. 낚시 관련 사업의 지도·감독을 하려는 경우
 2. 미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낚시터업자의 낚시터에 대한 출입·검사는 그 처분·명령일(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정지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처분 또는 명령의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서식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 낚시통제구역 표지판의 규격 등(제2조 관련)

낚시통제구역 표지판 (제2조 관련)

	120cm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20px;">낚시통제</div> <p>1. 통제구역 :</p> <p>2. 통제면적 :</p> <p>3. 통제기간 :</p> <p style="margin-top: 20px;">이 지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므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낚시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허가 없이 낚시를 하게 되면 같은 법 제〇〇조 제〇〇항에 따라 〇〇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font-size: 18px; font-weight: bold;">〇〇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p>	90cm

■ 표지판 제작 및 설치 요령

1. 이 경고판은 낚시통제구역의 주요 입구에 설치한다.
2. 설치 부서에서는 크기와 모양 그리고 핵심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할 수 있다.
3. 구역도를 표시할 수 있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12.9.10>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 (제〇〇조 관련)

가. 게시방법

(1) 재질 : 아크릴 등 변색되지 아니하는 재질

(2) 색상

(가) 글씨 : 흑색

(나) 바탕 : 승선정원 - 백색

승객준수사항 - 노란색

(3)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

당해 낚시어선의 부착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하되, 누구나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래의 (예시)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

나. 게시장소

당해 낚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

(게시방법의 예시)

승 선 정 원 〇 〇 명
승객준수사항 ※ 기재내용 : 법 제3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승객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표기함. 1. 2. .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제6조관련)

I.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낚시터업 허가의 취소·정지 처분(이하 “행정처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등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가 3회를 초과한 때에는 가장 중한 처분을 적용한다.
2. 2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적발된 경우에는 그중 가장 중한 행정처분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로서 행정처분등의 기준이 각각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정지처분기간을 합산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다만, 정지처분기간을 합산한 일수가 1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관할행정기관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의 합산일수가 150일을 초과한 어선이 다시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처분등의 기준이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4. 관할행정기관은 행정처분등의 대상자가 수산업발전과 관련하여 상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훈장 및 포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포상(공로패를 포함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표장(공로패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위 안에서

II.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행정처분등의 기준을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 가. 허가정지 대상인 경우 : 행정처분 등 기준일수의 2분의 1
- 나. 허가취소 대상인 경우 : 90일 이상의 허가정지 요구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설 2012.9.10>

우수낚시터 지정신청 수수료 (제○○조제○항 관련)

항 목	건 수	수수료(원)
○ 우수낚시터 지정신청(신규·갱신)	1	100,000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낚시터업 허가(등록)기간 연장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번호	낚시터업허가 제 (년도)- 호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년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 . .부터 . . .까지(년간)		
신청 사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〇〇조에 따라 허가 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신청인 제출서류	낚시터업허가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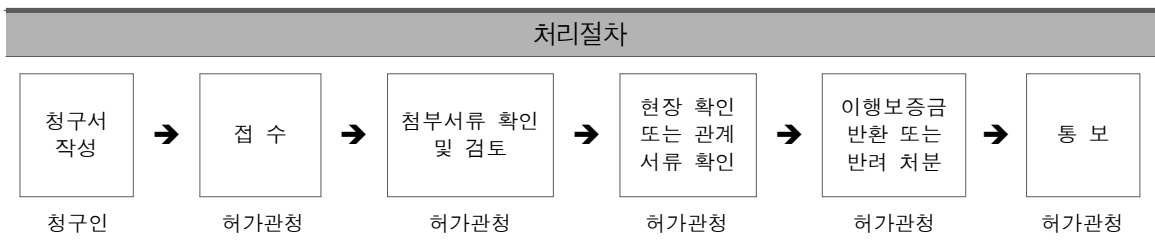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청구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 연월일 및 번호			
허가장소			
허가면적 m²			
허가목적			
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의 종류 및 개요			
원상회복(원상회복 의무 면제 및 준공검사) 연월일		년	월 일
이행보증금의 종류	[] 현금 [] 보증서 등		
<p>「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장 청구인 (서명 또는 인)</p>			
<p>(허가관청의 장) 귀하</p>			

첨부서류	공유수면으로의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으로 원상회복을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이 별지에서 “허가관청”이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2.9.10>

낚시터업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낚시터의 위치 및 구역		도 군 면 리 지선	
낚시터의 명칭과 수면적		낚시터	
		수면적	
자원조성 실적		실적	잠재자원량
낚시터 부대시설			
포획물의 종류			
낚시기간		. . .부터 . . .까지(월간)	
등록을 받으려는 기간		. . .부터 . . .까지(년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낚시터업의 등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수면의 위치도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2.9.10>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서

※ 뒤쪽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승계하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승계받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낚시터	명칭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등록)번호		승계 사유	<input type="checkbox"/> 양도·양수 <input type="checkbox"/> 상속 <input type="checkbox"/> 기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2.9.10>

낚시터업 휴업(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허가(등록)번호			
낚시터명			
휴업(폐업)일자			
휴업(폐업)의 사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낚시터업의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낚시터업 허가(등록)필증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2.9.10>

낚시어선업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선원 중 해기사면허 소지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면허의 직종 및 등급
어선명세	④ 어선번호	⑤ 어선의 명칭	⑥ 선적항
	⑦ 총톤수	톤	⑧ 최대 승선 낚시어선 승객 수 명
⑨ 계선장소			
⑩ 영업구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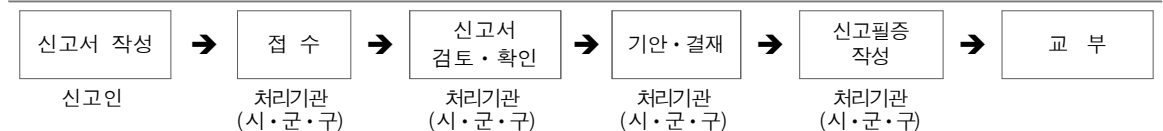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보험 또는 공제가입증서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수수료는 조례에 따름
------	--	----------------

작성방법

- ⑥란의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기재된 어선등록 항·포구명을 적습니다.
- ⑧란의 최대승선 낚시어선 승객수는 어선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 승선할 수 있는 낚시어선 승객수를 적습니다.
- ⑨란의 계선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주영업장소)로서 출입항신고 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포구명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9.10>

제 호

낚시어선업신고확인증

낚시어선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	성명	생년월일	면허의 직종 및 등급
어선명세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총톤수	톤 최대승선낚시 어선 승객수	명
계선장소			
영업구역			
유효기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2.9.10>

낚시어선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고필증번호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낚시어선업신고확인증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2.9.10>

기관명

우○○○-○○○/주소/전화()○○○-○○○○ /전송(○○)○○○-○○○○

담당부서명 과장 ○○○ 사무관 ○○○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받음	발신	시·도지사 인

제목 공동영업구역 지정요청서

공동영업구역을 지정받고자 하는 사유(요약)	
공동영업구역을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의 위치와 면적	행정구역, 각점의 경위도 및 면적표시 (별지 도면과 같음)
다른 도와와의 관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의 지정을 받고자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영업구역 지정요청사유서 2.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구역(이하 “지정예정구역” 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간의 협의결과에 관한 서류 3. 지정예정구역의 위치와 구역에 관한 도면 4. 지정예정구역의 낚시어선업 실태조사서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2.9.10>

낚시어선출(입)항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낚시어선업 신고필증번호		선 명	
신고인 인적사 항	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주소	전화번호
	선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	주소	전화번호
어선 제원	등록번호	톤수	승선정원
	속력	통신기	선적지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신 고 사 항

		출항					입항			
일시	출항지	낚시장소	입항예정		신고자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	통제 (신고)소장	일시	장소	확인 (서명 또는 인)
			일시	장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제1항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입)항 함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출입항 ○○소장 귀하

첨부서류	승객(선원)명부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12.9.10>

기관명

우○○○-○○○/주소/전화()○○○-○○○○ /전송(○○)○○○-○○○○
 담당부서명 과장 ○○○ 사무관 ○○○ 담당자 ○○○

행정처분통지서

제 호

사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행정처분내용				

귀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12.9.10>

낚시어선업폐업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고확인증번호				
폐업일자				
폐업의 사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낚시어선업신고확인증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12.9.10>

제 호

수 거 (압 류) 증

기호	번호		실온	냉장	냉동	국산품	수입품
수거품(압류품)		성명				상호	
제 조·가공업소의 상호·소재지		소재지				전화번호	
수거품(압류품)		성명				상호	
수입판매업 등의 상호·소재지		소재지				전화번호	
		수입국가명					
수거품(압류품)		성명				상호	
유통전문판매업소의 상호·소재지		소재지				전화번호	
수거품(압류품)명							
수거(압류) 미끼유형							
수거(압류) 수량							
수거(압류) 사유							
수거(압류) 일시		시			분		
품목 제조연월일							
수거(압류) 장소							
수거(압류) 확인자		(서명 또는 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수거(압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거자 (압류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12.9.10>

(앞 쪽)

제 호

낚시 감독 공무원

사 진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소속기관장

55mm × 85mm [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하늘색)

(뒤 쪽)

낚시 감독 공무원

소속/직위(명):

성 명:

생년월일:

활동기간:부터까지

위 사람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 23조제1항·제30조제2항·제42조제1항제 50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직인

1. 낚시감독 공무원이 폐쇄조치 등, 측정, 확인, 폐기 등 조치, 출입검사 등을 하는 때에는 항상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이를 내보여야 합니다.
2.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이 증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못합니다.
3. 이 증표의 기재사항 중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12.9.10>

우수낚시터 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등록(신고)번호		제 호	등록(신고)연월일
	낚시터명		전화번호	
	소재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우수낚시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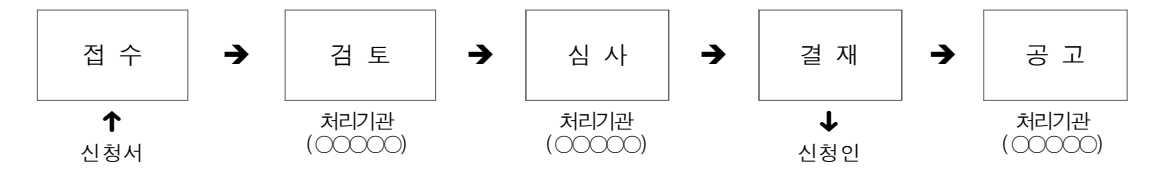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제○○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수입인지) 100,000원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우수낚시터 지정서

제 호

낚시터명		등록(신고)번호	
사업자명		생년월일	
소재지			
우수사업 지정내용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〇〇조제3항에 따라 위 낚시터를 우수낚시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또는 〇〇〇〇장)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평가결과서

정책 연구 과제 명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마련 방안 연구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이순태
부서 /과 제 담 당 관	어업자원관실 자원환경과 / 과장 김정욱	담당공무원	유 원 상
연 구 방 식	1. 위탁형 용역(√) 2. 공동연구형 용역() 3. 자문형 용역()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2.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1.4.18 ~ 2011.9.17 (5개월)		
연 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주요법안 검토 ○ 낚시 제한기준 제시 및 낚시용 미끼의 환경기준 등 ○ 유해 낚시도구 제한 및 낚시터 시설 기준 제시 		
평 가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연구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적정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적정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적정 •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 적정 • 기타사항 : 적정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수협 3급 유승완	자원환경과장 김정욱

[별지 제5호 서식]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 연구 과제 명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마련 방안연구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이순태
부서 /과 제 담 당 관	어업자원관실 자원환경과 /과장 김정욱	담당공무원	유 원 상
연 구 기 간	2011.4.18 ~ 2011.9.17 (5개월)		
활 용 구 분	1. 법·제도 개선(√) 2. 정책반영 3. 정책참조()		
연 구 목 적	○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낚시 산업 발전을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규제 사항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연 구 주 요 내 용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주요법안 검토 ○ 낚시 제한기준 제시 및 낚시용 미끼의 환경기준 등 ○ 유해 낚시도구 제한 및 낚시터 시설 기준 제시		
활 용 목 적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기반마련		
정책 활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 타당 · 타당성 분석 결과 및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설정 등 · 법·제도 개선 및 정책반영, 정책참조 등 활용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제정예정(12) 		